

- 2020년도 제2회 충청남도 -

추가경정예산 사업설명서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충청남도
(경제실)

목 차

< 일 반 회 계 >

○ 경제정책과	-----	1
○ 일자리노동정책과	-----	13
○ 소상공기업과	-----	47
○ 투자입지과	-----	93
○ 국제통상과	-----	113

경제정책과

경제정책과

1. 충남 경제포럼 5
2. 금융소외자 소액금융지원 7
3. 충남 경제상생협력 방안마련 기본계획수립
연구용역 9
4. 소비자 지향성 향상 방안 연구용역 11

충남 경제포럼	정책사업	지역경제육성
	단위사업	지역경제활성화
	세부사업	경제정책개발
	통 계 목	민간행사사업보조 (307-04)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지역 기업 CEO들의 경영 정보 교류 및 경제 불확실성 해소로 기업투자 활성화
- 사업 위치 : 도내
- 사업 기간 : 2020. 1. 1. ~ 2020. 12. 31.
- 예 산 액 : **0천원(도비 100%) 【 기정액: 4,000천원 + 감: 4,000천원 】**
 - ※ 상공회의소 지원사업을 통해 경제포럼 진행, 도비 전액 삭감
- 사 업 량 : 세미나 1회
- 사업시행방법 : 민간대행
- 사업시행주체 : 공고 선정
- 사업 내용 : 경제포럼 조찬세미나 및 토론회 개최
 - 충청남도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19조

제54조(보조금) : 지방자치단체는 상공회의소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충청남도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19조(기업관련 단체 지원)

② 도지사는 기업관련 단체의 사업 중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하여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충남경제포럼 토론회 : 4,000천원(도비)	
	○ 조찬비 : 15천원×160 = 2,400천원	
	○ 교재제작 : 7.5천원×180 = 1,350천원	
	○ 강사료 : 1,000천원 1,000천원 × 1회 = 1,000천원	
	○ 물품구입비(문구류) = 250천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2회추경(B)	증감(B-A)		
계	0	0	4,000	0	-4,000	0	전액 삭감
국 비	0				0		
도 비	0		4,000	0	-4,000		
시군비	0				0		
기 타	0				0		

* 보조율 : 도비 10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5,000	5,000	0	100%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19년 (2020~2024)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경제실	경제정책과	경제정책팀	송무경 (행) 2210	신일호 (행) 3301	채용병 (행) 3315

금융소외자 소액금융지원	정책사업	지역경제육성
	단위사업	지역경제활성화
	세부사업	금융소외자 소액금융지원
	통 계 목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308-10)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금융소외계층의 고금리 금융기관 이용 방지를 통한 가계 경제 악순환 해소 및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상황이 악화된 서민 및 금융소외계층에 재정적 지원 도모
- 사업 위치 : 충청남도
- 사업 기간 : 20.06.~20.12.(신규사업)
- 예 산 액 : **400,000천원(도비 100%)** 【기정액 : 0천원 + 증 : 400,000천원】
- ※ 증감 사유 : 코로나19 상황 속 금융소외계층 지원을 위한 신규 사업 편성
- 사 업 량 : 금융소외자 소액금융지원 위탁사업 1식
- 사업시행방법 : 공기관대행
- 사업시행주체 : 충남신용보증재단
- 사업 내용 : 도내 거주 금융소외자의 경제적 회생 위해 긴급자금 소액 대출 지원
- 지원근거 : 충청남도 충남신용보증재단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호

충청남도 충남신용보증재단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재정지원)
 충청남도지사, 시장·군수는 재정지원에 필요한 경우 도, 시·군의 재단 위탁사업에 대한 비용 등을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소외자 소액금융지원 : 400,000천원 ○ 신용보증재단 위탁사업비 1식 : 400,000천원 · 산출 근거 : 평균 3,180천원(1인 기준) × 125명 ≒ 400,000천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2회추경(B)	증감(B-A)		
계	2,000,000	0	0	400,000	400,000	1,600,000	신규
국 비	0				0		
도 비	2,000,000	0	0	400,000	400,000	1,600,000	
시군비	0				0		
기 타	0				0		

* 보조율 : 도비 10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	-	-	-	-	신규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19년 (2020~2024)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경제실	경제정책과	경제상생협력팀	송무경 (행) 2210	조규호 (행) 3305	권영인 (행) 3311

충남 경제상생협력 방안마련 기본계획수립 연구용역	정책사업	지역경제육성
	단위사업	지역경제활성화
	세부사업	경제상생협력
	통 계 목	연구용역비 (207-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① 20.1.21.자 경제정책과 內 경제상생협력팀 신설 (기능 및 역할점검과 정책 추진 기본방향 설정)
- ② 충남도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실태조사와 분석을 통해 상생 정책발굴, 집행 체계 확립 등 기본 방향 설정

○ 사업 위치 : 충청남도 전체

○ 사업 기간 : 20.05. ~ 20.12.31.(신규사업)

○ 예 산 액 : 80,000천원(도비 100%) 【기정액 : 0천원 + 증 : 80,000천원】

○ 사 업 량 : 충남 경제상생협력 방안마련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1식

○ 사업시행방법 : 공동연구형

○ 사업시행주체 : 충청남도, 충남연구원 연구용역

○ 사업 내용 : 도내 기업간 상생협력 실태조사 분석, 충남 상생협력 대표 사업 발굴 연구, 충남형 경제상생협력 추진을 위한 거버넌스 등 지원 및 추진체계 구축 방안 등

○ 지원근거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3조,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조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과 지역의 특성에 맞는 자립적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지역주도의 관련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4,5조(대중소기업 상생협력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추진 기본계획을 3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관계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추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충남 경제상생협력 방안마련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 80,000천원 ○ 인건비: 40,190천원 · 책임연구원: (3,229,730원×2)×참여율(30%)×1명×7개월 = 13,565천원 · 연구원: (2,476,514원×2)×참여율(30%)×1명×7개월 = 10,401천원 · 연구보조원: (1,655,466원×2)×참여율(40%)×1명×7개월 = 9,271천원 · 보조원: (1,241,642원×2)×참여율(40%)×1명×7개월 = 6,953천원 	

구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고
산출 기초	○ 경비: 29,875천원 · 국내여비: 2,450천원 · 인쇄비: 3,025천원 · 전산처리비: 200천원 · 회의비(포럼, 세미나 등 수당): 4,000천원 · 교통, 통신비: 200천원 · 연구조사비(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실태조사) : 20,000천원 ○ 이윤: 2,662천원 ○ 부가가치세: 7,272천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2회추경(B)	증감(B-A)		
계	80,000	0	0	80,000	80,000	0	신규
국비	0				0		
도비	80,000	0	0	80,000	80,000		

* 보조율 : 도비 10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도	예산현액(A)	집행액(B)	집행잔액(C=A-B)	집행률(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고
2019년	-	-	-	-	-	신규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19년 (2020~2024)	-	-	2020.4.7.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경제실	경제정책과	경제상생협력팀	송무경 (행) 2210	조규호 (행) 3305	김상록 (행) 2214

소비자지향성 향상 방안 연구용역	정책사업	지역경제육성
	단위사업	유통산업발전 및 구조개선
	세부사업	소비자권익증진 지원
	통 계 목	연구용역비 (207-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소비자관점에서 도민의 소비생활실태 및 니즈 파악, 각종 정책과 제도 개선·검토를 통한 소비자정책 전반의 소비자지향성* 향상 방안 마련
 - * 관계 행정기관의 법령 및 제도 등이 소비자 권익 증진을 위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정도
- 사업 위치 : 충청남도
- 사업 기간 : 2020. 5. ~11.(신규사업)
- 예 산 액 : **20,000천원(도비 100%) 【기정액 : 0천원 + 증 : 20,000천원】**
- 사 업 량 : 소비자지향성 향상 방안 연구용역 1식
- 사업시행방법 : 공동연구형
- 사업시행주체 : 충청남도(한국소비자원 연구용역)
- 사업 내용 : 도민 소비자피해현황 심층 분석, 소비생활실태 및 의식조사 실시, 소비자지향성 제고를 위한 법령 및 제도 개선과제 발굴 및 개선방안 제시 등
- 지원근거 : 소비자기본법 제6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가 실현되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책무를 진다

1. 관계 법령 및 조례의 제정 및 개정·폐지
3. 필요한 시책의 수립 및 실시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충청남도 소비자정책의 소비자지향성 향상방안 연구용역: 20,000천원 ○ 인건비 :14,894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책임연구원(3,229,730×2)×참여율(15%)×1명×7개월=6,782천원 · 연구보조원(1,655,466×2)×참여율(20%)×1명×7개월=4,635천원 · 보조원(1,241,642×2)×참여율(20%)×1명×7개월=3,476천원 ○ 기본경비 : 2,450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여비, 인쇄비 등 ○ 이윤 : 837천원 ○ 부가가치세 : 1,818천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2회추경(B)	증감(B-A)		
계	20,000	0	0	20,000	20,000	0	신규
국 비	0				0		
도 비	20,000	0	0	20,000	20,000		
시군비	0				0		
기 타	0				0		

* 보조율 : 도비 10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	-	-	-	-	신규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19년 (2020~2024)	-	-	2020.4.7.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경제실	경제정책과	소비자보호팀	송무경 (행) 2210	이상국 (행) 3304	이민화 (행) 2212

일자리노동정책과

일자리노동정책과

1. 상생형 지역특화 일자리 컨설팅사업	17
2. 청년일자리허브 Y+센터 운영(부서이관)	19
3. 충남형 일자리 소통공간 운영(부서이관)	21
4.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체계 구축(과목경정) ..	23
5.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25
6.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추진	27
7.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	29
8. 노사민정 협력활성화(과목경정)	31
9. 산업안전지킴이 운영	34
10. 중소기업 근로자와 가족을 위한 방문 심리상담사 파견사업(과목경정)	36
11. 노사민정 사무국 운영(과목경정)	38
12. 실직자 등 긴급 생계지원(재원변경)	41
13. 노사협력 우수사례 탐방	43
14. 충남 근로자복지회관 노후시설 보수 및 주변공사(과목경정)	45

상생형 지역특화 일자리 컨설팅사업	정책사업	고용안정
	단위사업	일자리 창출 기반 구축
	세부사업	취업정보인프라 구축 지원
	통 계 목	연구용역비 (207-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충남 주력 업종에서의 고용 창출력 한계, 일자리의 질 저하 등 충남의 고용관련 다양한 문제를 극복하고 지속가능 일자리 창출을 위한 충남 상생형 일자리 모델 발굴
- 사업 위치 : 충청남도내
- 사업 기간 : 2020. 5. ~ 11.(2020년 신규사업)
- 예 산 액 : **42,600천원(도비 42,600) 【 기정액: 0천원 + 증: 42,600천원 】** ※국비 '19년 간주로 기편성
 ※ 신규 편성 사유 : '19년 12월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국비 확보분에 대한 도비 매칭 사업비 편성
- 사 업 량 : 충남 상생형 일자리 모델 구축을 위한 지역산업현황 진단, 사업기획 추진 등
- 사업시행방법 : 연구용역
- 사업시행주체 : 민간단체
- 사업 내용 : 지역의 미래 먹거리가 될 산업 현황을 분석하고 상생형 일자리 모델의 기반이 될 산업 구체화, 구체화된 산업유형을 기반으로 기업 투자유치전략 수립 및 노사상생방안 마련
- 지원근거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1조제3항, 제11조의2제1항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1조(지역산업 육성의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산업의 육성과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지역특성에 맞는 중소기업의 창업 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2. 지역의 정보화 촉진 및 정보통신 진흥에 관한 사항
3. 지역의 일자리 창출과 국내외 기업투자 유치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4. 지역특성에 따른 산업의 지원과 관련 기관 간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역기업의 육성 및 지역투자 활성화 등 지역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1조2(상생형지역일자리)의 선정·지원 등) ① 국가는 지역의 투자를 촉진하고 지역일 자리를 창출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기업, 근로자, 주민 등 다양한 경제주체 간 근로여건, 투자계획, 복리후생 또는 생산성 향상 등에 대한 합의를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이하 “상생형지역일자리”라 한다)을 선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생형 지역특화 일자리 컨설팅사업 : 211,000천원 ○ (국비) 조사컨설팅비 : 168,400천원 ○ (도비) 운영비 : 32,000천원 · 전문가 자문료 및 회의비용 : 200천원×10명×10회=20,000천원 · 결과보고서 제작 등 사무용품비 : 12,000천원×1식=12,000천원 ○ (도비) 업무추진비 2,000천원, 국내여비 8,600천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2회추경(B)	증감(B-A)		
계	211,000	168,400	0	42,600	42,600	0	신규
국 비	168,400	168,400			0		균특 '19년 2주 후 0월
도 비	42,600			42,600	42,600		
시군비	0				0		
기 타	0				0		

* 보조율 : 국비 80%, 도비 2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	-	-	-	-	2020년 신규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19년 (2020~2024)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경제실	일자리노동정책과	일자리정책팀	이상국 (행) 2240	강영규 (행) 3401	남주영 (행) 3411

청년일자리허브 Y+센터 운영(부서이관)	정책사업	고용안정
	단위사업	일자리 창출 기반 구축
	세부사업	취업정보인프라 구축 지원
	통 계 목	민간경상사업보조 (307-02)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대학 내 진로지도 및 취·창업 지원기능의 일원화 및 지역 청년고용 거버넌스 구축·운영을 통해, 지역 청년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원스톱 고용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지원
- 사업 위치 : 충청남도
- 사업 기간 : 2020. 1. ~ 2020. 12.(단년도 사업)
- 예 산 액 : **0천원(도비 100%) 【 기정액: 70,000천원 + 감: 70,000천원 】**
 ※ 감액 사유: 2020. 1. 1.자 조직개편으로 해당 사업이 공동체지원국 청년정책과로 이관됨
- 사 업 량 : 2개소(백석대, 호서대)
- 사업시행방법 : 민간보조
- 사업시행주체 : 각 대학
- 사업 내용 : 대학의 청년 일자리 시책 개발 및 취·창업 프로그램 운영 등 지원
 - 도내 대학일자리센터(2개소)를 지원하여 산업계 수요와 대학의 인력공급이 연계될 수 있도록 지원
 - 취·창업 지원 인프라 구축, 진로지도 강화, 취·창업 지원서비스 강화, 지역청년 고용 거버넌스 구축 지원
- 지원근거 : 고용정책 기본법 제12조

고용정책 기본법 제12조(민간에 의한 고용서비스 제공 지원 등) ① 국가는 민간 고용서비스산업의 발전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고용서비스 전문가의 양성 2. 공공부문과 민간의 고용 관련 정보망의 연계 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고용서비스 제공사업 중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는 사업의 발굴과 그 사업의 위탁 4. 우수한 고용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기관에 대한 인증 ② 직업안정기관과 민간기관은 고용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거나 연계하여 추진하는 등 서로 협력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③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고용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민간 고용서비스 제공기관 등에 시설·장비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청년일자리허브 Y+센터 운영 : 70,000천원 ○ 센터 운영비 35,000천원×2개소(백석대, 호서대) = 70,000천원 ※ 도립대는 대학회계로 자체운영 ※ 대학일자리센터 도비매칭사업(국비50%, 자치단체25%, 대학25%) → 전액 삭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2회추경(B)	증감(B-A)		
계	0	0	70,000	0	-70,000	0	전액 삭감
국 비	0				0		
도 비	0		70,000		-70,000		
시군비	0				0		
기 타	0				0		

* 보조율 : 도비 10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70,000	70,000	0	100%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19년 (2020~2024)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경제실	일자리노동정책과	일자리정책팀	이상국 (행) 2240	강영규 (행) 3401	장수정 (행) 3417

충남형 일자리 소통공간 운영(부서이관)	정책사업	고용안정
	단위사업	일자리 창출 기반 구축
	세부사업	취업정보인프라 구축 지원
	통 계 목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 위탁사업비 (308-10)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구인기업 및 구직자에게 온오프라인 밀착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및 찾아가는 일자리 서비스 제공을 통한 구직자 맞춤형 일자리 정보 제공
- 사업 위치 : 충청남도
- 사업 기간 : 2020. 1. ~ 2020. 12.(단년도 사업)
- 예 산 액 : **0천원(도비 100%) 【 지정액: 470,000천원 + 감: 470,000천원 】**
- ※ 감액 사유: 2020. 1. 1.자 조직개편으로 해당 사업이 공동체지원국 청년정책과로 이관됨
- 사 업 량 : 찾아가는 일자리 버스 100회 운행, 200명 상담 / 취·창업 카페 6개소 운영, 500명 참가
- 사업시행방법 : 공기관 대행
- 사업시행주체 : 충청남도경제진흥원
- 사업 내용 : 맞춤형 취·창업 컨설팅 커뮤니티 공간 운영 및 찾아가는 취·창업 상담 서비스 제공
- 지원근거 : 고용정책 기본법 제6조

고용정책 기본법 제6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 ① 국가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각호 생략)

③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국가 시책과 지역 노동시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주민의 고용촉진과 지역주민에게 적합한 직업의 소개, 직업훈련의 실시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input checked="" type="checkbox"/> 충남 일자리 소통공간 운영 : 0천원 <input type="checkbox"/> 전액 삭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2회추경(B)	증감(B-A)		
계	0	0	470,000	0	-470,000	0	전액 삭감
국 비	0				0		
도 비	0		470,000		-470,000		
시군비	0				0		
기 타	0				0		

* 보조율 : 도비 10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500,000	500,000	-	100%	-	-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19년 (2020~2024)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경제실	일자리노동정책과	일자리정책팀	이상국 (행) 2240	강영규 (행) 3401	장수정 (행) 3417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체계 구축	정책사업	고용안정
	단위사업	일자리 창출 기반 구축
	세부사업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
	통 계 목	민간경상사업보조 (307-02)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 위탁사업비 (308-10)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지역 및 산업특성과 중소기업의 실수요를 반영한 인력양성체계를 구축하고 구직자·재직자 대상 교육훈련을 실시하여 노동생산성 향상 및 미스매치 해소를 도모
- 사업 위치 : 충청남도
- 사업 기간 : 2020. 1. 1. ~ 12. 31.(단년도 계속사업)
- 예 산 액 : **775,000천원(국비 575,000 도비200,000) 【 기정액: 800,000천원 + 감: 25,000천원 】**
- ※ 감액 사유 : 국비 삭감에 따른 사업비 조정
- ※ 과목경정 사유 : 충남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소속기관 변경(충남북부상공회의소 → 충남일자리진흥원)
- 사 업 량 : 정기 및 상시 수요·공급조사, 공동훈련센터 운영 지원, 정기회의 및 분과위원회 4회
- 사업시행방법 : 공기관 위탁(충남일자리진흥원 충남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 사업시행주체 : 충남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충남일자리진흥원)
- 사업 내용 : 지역·산업계의 인력·훈련 수요공급조사 및 공동훈련 실시
- 지원근거 :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22조의3(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에 대한 지원 등)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22조의3(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에 대한 지원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지역 단위 인력양성사업을 추진하거나 그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가 실시하는 교육훈련 수요조사와 인력양성 기본계획 수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연구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체계 구축 : 775,000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건비 : 267,000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담자 인건비 49,400천원 × 5명 = 247,000천원 · 겸임자 인건비 20,000천원 × 1명 = 20,000천원 ○ 운영비 : 508,000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요조사비 200,000천원, 위원회 회의비 79,200천원, 선임위원 및 위원회의 수당 65,700천원, 심사수당 25,900천원, 출장비 12,000천원, 업무추진비 11,220천원, 일반수용비 24,600천원, 자료인쇄비 8,600천원, 임차비 32,680천원, 홍보비 35,600천원, 회계감사비 등 12,500천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2회추경(B)	증감(B-A)		
계	775,000	0	800,000	775,000	-25,000	0	통계목 변경
국 비	575,000		600,000	575,000	-25,000		균특
도 비	200,000		200,000	200,000	0		
시군비	0				0		
기 타	0				0		

* 보조율 : 국비 74%, 도비 26%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785,000	747,896	37,104	95%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19년 (2020~2024)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경제실	일자리노동정책과	일자리지원팀	이상국 (행) 2240	김일환 (행) 3402	이순재 (행) 2242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정책사업	고용안정
	단위사업	일자리 창출 기반 구축
	세부사업	지역산업맞춤형 자치단체 지원 사업
	통 계 목	민간경상사업보조 (307-02)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지역·산업 특성을 반영한 일자리 사업 모델 발굴·추진 및 운영을 통한 지역내 고용증대
- 사업 위치 : 충청남도
- 사업 기간 : 2020. 1. 1. ~ 12. 31.(단년도 계속사업)
- 예 산 액 : **2,430,850천원(국비 1,830,000 도비 600,850) 【기정액 3,534,000천원 + 감 1,103,150천원】**
 ※ 감액 사유 : 고용노동부 공모사업 확정에 따른 사업비 조정
- 사 업 량 : 고용혁신단 운영(3명) 및 지역혁신프로젝트(고용노동부 공모사업) 1식
- 사업시행방법 : 민간대행(道와 비영리법인 컨소시엄)
- 사업시행주체 : 충남테크노파크, 한국기술사업화진흥협회, 지역경제와고용,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기계산업진흥회 기술연구원, 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 충남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 사업 내용 : 지역혁신프로젝트 사업 추진을 위한 혁신단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 일자리창출·고용촉진 등의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사업 발굴·추진(2개 프로젝트, 6개 세부사업)
- 지원근거 : 고용정책 기본법 제6조

<p>고용정책 기본법 제6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 ① 국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p> <p>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시행하는 경우에 기업경영기반의 개선, 경제·사회의 균형 있는 발전, 국토의 균형 있는 개발 등의 시책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고용기회를 늘리고 지역 간 불균형을 시정하며 중소기업을 우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차별적 고용관행 등 근로자가 능력을 발휘하는 데에 장애가 되는 고용관행을 개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p>③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국가 시책과 지역 노동시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주민의 고용촉진과 지역주민에게 적합한 직업의 소개, 직업훈련의 실시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p>④ 국가는 제3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p>
--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 2,430,850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혁신프로젝트 / 2개 프로젝트 6개 세부사업) : 2,253,350천원 ○ (고용혁신단 운영) 충남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 177,500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건비 : 126,600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담당자 인건비 42,200천원 × 3명 = 126,600천원 · 운영비 : 50,900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차비용 3,000천원, 회의비 11,400천원, 회의수당 5,400천원, 강사비 등 2,100천원 업무추진비 1,800천원, 인쇄비 6,000천원, 홍보비 2,240천원, 기념품제작 2,000천원 회계감사비 700천원, 여비 6,000천원, 사업수용비 7,860천원, 교육훈련 및 복지비 2,400천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2회추경(B)	증감(B-A)		
계	2,430,850	0	3,534,000	2,430,850	-1,103,150	0	
국 비	1,830,000		2,650,000	1,830,000	-820,000		균특
도 비	600,850		884,000	600,850	-283,150		
시군비	0				0		
기 타	0				0		

* 보조율 : 국비 75%, 도비 25%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2,422,500	2,079,260	343,240	85%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19년 (2020~2024)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경제실	일자리노동정책과	일자리지원팀	이상국 (행) 2240	김일환 (행) 3402	이순재 (행) 2242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추진	정책사업	고용안정
	단위사업	일자리 창출 기반 구축
	세부사업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시군경상)
	통 계 목	자치단체경상보조금 (308-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취약계층 대상 직접일자리 제공으로 생계안정 도모 및 자립기반 마련
- 사업 위치 : 15개 시·군
- 사업 기간 : 2020. 1. ~ 2020. 12.(단년도 계속사업)
- 예 산 액 : **2,608,219천원(국비 2,006,323 도비 601,896) 【 기정액: 2,837,197천원 + 감: 228,978천원 】**
- ※ 감액 사유: 행정안전부 확정 내시에 따른 사업비 감액
- 사 업 량 : 519명(직접일자리 제공)
- 사업시행방법 : 시군시행
- 사업시행주체 : 15개 시·군
- 사업 내용 : 저소득취업취약계층(만 18세 이상인 근로능력자로서 1인 가구는 기준중위소득 120%이하, 2인 이상 가구는 기준중위소득 65%이하이면서 재산 2억원 이하인 자)에게 직접일자리 제공
- 4대 유형 9개 사업: 지역특산물상품화 및 전통기술습득사업, 공동작업장 운영사업, 다문화가정 지원사업, 마을가꾸기 및 지역 유희공간시설 활용사업 등
- 지원근거 : 고용정책기본법 제6조

고용정책 기본법 제6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

① 국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6. 학력·경력의 부족, 고령화, 육체적·정신적 장애, 실업의 장기화, 국외로부터의 이주 등으로 인하여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자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등(이하 "취업취약계층"이라 한다)의 고용촉진에 관한 사항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추진 : 4,012,646천원 ○ 자치단체경상보조금 : 4,012,646천원(사업장수 85개소, 인원 519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유형(지역자원 활용형) : 1,594,651천원(사업장수 32개소, 인원 213명) · 2유형(지역기업 연계형) : 166,570천원(사업장수 5개소, 인원 18명) · 3유형(서민생활 지원형) : 559,783천원(사업장수 14개소, 인원 63명) · 4유형(지역공간 개선형) : 1,691,642천원(사업장수 34개소, 인원 225명)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2회추경(B)	증감(B-A)		
계	4,012,646	0	4,364,918	4,012,646	-352,272	0	
국 비	2,006,323		2,182,459	2,006,323	-176,136		균특
도 비	601,896		654,738	601,896	-52,842		
시군비	1,404,427		1,527,721	1,404,427	-123,294		
기 타	0				0		

* 보조율 : 국비 50%, 도비 15%, 시군비 35%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3,816,116	3,628,494	187,622	95%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19년 (2020~2024)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경제실	일자리노동정책과	일자리지원팀	이상국 (행) 2240	김일환 (행) 3402	주 경 (행) 3418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	정책사업	고용안정
	단위사업	일자리 창출 기반 구축
	세부사업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
	통 계 목	자치단체경상보조금 (308-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코로나19 확산으로 생계 불안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 근로자 등 지원을 통한 생계 안정
도모로 지역 고용 안정 및 경제 위기 대응
- 사업 위치 : 충청남도
- 사업 기간 : 2020. 4. ~ 9.(2020년 신규사업)
- 예 산 액 : **10,500,000천원(국비 100%) 【 기정액: 0천원 + 증: 10,500,000천원 】**
- ※ 신규 편성 사유 : 고용노동부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편성
- 사 업 량 : 1식
- 사업시행방법 : 시군시행
- 사업시행주체 : 15개 시군
- 사업 내용 :
 - 무급휴직 상태인 저소득층 근로자에게 생계비 지원
 - 저소득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등에 한시적 재정지원을 통한 생계비 지원
 - 실직자 단기 일자리 제공을 통한 실직자 생활 안정
 - 직업 훈련이 중단된 저소득 훈련생에게 훈련수당에 준하는 생계비 지원
- 지원근거 : 고용정책 기본법 제6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

고용정책 기본법 제6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 ① 국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3. 근로자의 실업 예방, 고용안정 및 고용평등 증진에 관한 사항

8. 지역 고용창출 및 지역 노동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지역별 고용촉진에 관한 사항 (이하 생략)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 : 10,500,000천원 ○ 사업비 : 10,229,623천원 ·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 4,126,000천원, 특고·프리랜서 등 지원 4,958,000천원 실직자 등 단기 일자리 제공 1,041,223천원, 직업훈련 중단 훈련생 지원 104,400천원 ○ 운영비 : 270,377천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2회추경(B)	증감(B-A)		
계	10,500,000	0	0	10,500,000	10,500,000	0	신규
국 비	10,500,000		0	10,500,000	10,500,000		
도 비	0				0		
시군비	0				0		
기 타	0				0		

* 보조율 : 국비 10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	-	-	-	-	2020년 신규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19년 (2020~2024)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경제실	일자리노동정책과	일자리지원팀	이상국 (행) 2240	김일환 (행) 3402	이순재 (행) 2242

노사민정 협력활성화(과목경정)	정책사업	고용안정
	단위사업	노사복지
	세부사업	지역 노사민정 협력활성화 지원 (협의회 사업 지원)
	통 계 목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 위탁사업비 (308-10)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산업안전 개선, 지역불균형 해소와 청년창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및 노동 환경개선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
- 사업 위치 : 충청남도
- 사업 기간 : 2020. 1. ~ 2020. 12.(단년도 계속사업)
- 예 산 액 : **160,000천원(국비 80,000 도비 80,000) 【 기정액: 160,000천원 + 증감: 0천원 】**
- ※ 과목경정 사유 :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의 소속기관 변경에 따른 과목경정
- 사 업 량 : 5개 분야 11개 이상 사업
- 사업시행방법 : 공기관 위탁
- 사업시행주체 :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충남일자리진흥원)
 - 노동권익증진(산업안전교육, 기초고용질서확립, 취약계층지원 등)
 - 노사협력증진(노사파트너십 교육, 노사협력포럼, 노사갈등조정중재단 운영 등)
 - 일자리창출지원(충남잡담콘서트, 찾아가는 마이크를 부탁해, 충남고용노동컨퍼런스 등)
 - 노사민정 거버넌스 강화(분과위원회 개최 등)
 - 기초지자체활성화 지원(컨설팅 등)
- 지원근거 :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조, 충청남도 노사관계 발전 지원조례 제12조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국가의 책무) 국가는 노사의 자치가 강화되고 노사 협력적 관계가 정착·발전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5.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비영리법인 지원에 관한 사항

8. 그 밖의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사항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 각 호에 따른 국가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 지역의 근로자, 사용자 및 주민과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역 노사민정"이라 한다) 간 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지역 노사민정 간 협력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충청남도 노사관계 발전 지원조례 제12조(노사민정 간 협력증진 지원) 도지사는 제11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협의회 사무국의 운영·위탁 및 노사민정 활성화 사업을 추진할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사민정 협력활성화 : 160,000천원(국비 80,000 도비 80,000) ○ 노동권익증진 : 35,000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초고용질서 확립을 위한 캠페인 = 5,000천원 · 지역현장과 함께하는 노동상담실 운영 = 10,000천원 · 충남지역 민간 고용서비스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 20,000천원 ○ 노사협력증진 : 32,000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사갈등 조정 중재단 운영 = 20,000천원 · 노사협력포럼 = 12,000천원 ○ 일자리창출 기반구축 : 41,000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충남자동차산업위기진단 및 지역의 대응방안 : 16,000천원 · 충남 고용노동 컨퍼런스 : 15,000천원 · 충남노사민정 공동선언 이행점검단 운영 : 10,000천원 ○ 노사민정 거버넌스 강화 : 32,000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과위원회 활성화 지원 : 10,000천원 · 노사민정협력활성화 사업보고회 : 10,000천원 · 충남고용노동리포트 발행 : 12,000천원 ○ 기초지자체 협력활성화 : 20,000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초지자체 노사민정협력활성화 컨설팅 운영 : 10,000천원 · 시군 노사민정 공동사업 추진 : 10,000천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2회추경(B)	증감(B-A)		
계	160,000	0	160,000	160,000	0	0	통계목 변경
국 비	80,000		80,000	80,000	0		
도 비	80,000		80,000	80,000	0		
시군비	0				0		
기 타	0				0		

* 보조율 : 국비 50%, 도비 5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8년	80,000	79,846	154	99.8%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19년 (2020~2024)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경제실	일자리노동정책과	노사협력팀	이상국 (행) 2240	김재환 (행) 3404	이원복 (행) 3414

산업안전지킴이 운영	정책사업	고용안정
	단위사업	노사복지
	세부사업	노사안정 및 교류 지원
	통 계 목	사무관리비 (201-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노동자 인권보호 및 산업재해로부터 안전한 일터 조성 요구에 따라, 산업안전지킴이 운영을 통한 도내 산업안전 의식 확산 및 산재사망사고 감소에 기여
- 사업 위치 : 충청남도
- 사업 기간 : 2020. 5. ~ 12.(2020년 신규사업)
- 예 산 액 : 29,400천원(도비 100%) 【 지정액: 0천원 + 증: 29,400천원 】
 - ※ 신규 편성 사유 : '20년 신규추진에 따른 산업안전지킴이 활동수당 편성
- 사 업 량 : 2식(상·하반기 현장점검)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충청남도
- 사업 내용 : 상·하반기 지자체 발주공사 현장 지도·점검 및 산재예방 활동 추진
- 지원근거 : 충청남도 노사관계 발전 지원 조례 제16조 제8호

충청남도 노사관계 발전 지원 조례 제16조(지원대상 사업) 도지사는 지원대상 사업이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8. 산재예방 및 사회적응 프로그램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산업안전지킴이 운영 : 29,400천원 ○ 지자체 발주공사 현장 지도·점검 추진 : 29,400천원 · 활동수당 : 190천원(2시간)×35명×2일×2회(상·하반기) = 26,600천원 · 실비지급 : 20천원×35명×2일×2회(상·하반기) = 2,800천원 ※ 산출근거 : 2020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충남공무원교육원 강사수당 및 원고료 등 지급기준(퍼실리테이터 수당 3급 기준)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2회추경(B)	증감(B-A)		
계	29,400	0	0	29,400	29,400	0	신규
국 비	0				0		
도 비	29,400		0	29,400	29,400		
시군비	0				0		
기 타	0				0		

* 보조율 : 도비 10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	-	-	-	-	2020년 신규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19년 (2020~2024)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경제실	일자리노동정책과	노사협력팀	이상국 (행) 2240	김재환 (행) 3404	이미용 (행) 2244

중소기업 근로자와 가족을 위한 방문 심리상담사 파견사업(도민참여)(과목경정)	정책사업	고용안정
	단위사업	노사복지
	세부사업	노사안정 및 교류지원
	통 계 목	민간경상사업보조 (307-02)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 위탁사업비 (308-10)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중소기업 근로자들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보다 행복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선진국에 이미 보편화 되어있는 산업카운슬러 제도처럼 무료 방문(순회) 상담서비스 실시
- 사업 기간 : 2020. 1. ~ 2020. 12.(신규사업)
- 예 산 액 : **620,400천원(도비 100%) 【 기정액: 620,400천원 + 증감: 0천원 】 * 과목경정**
 ※ 과목경정 사유 :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의 소속기관 변경에 따른 과목경정
- 사 업 량 : 심리상담사 파견사업 1식
- 사업시행방법 : 공기관 위탁
- 사업시행주체 :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충남일자리진흥원)
- 사업 내용 : 15개 시군에 상담사 1~2명씩 파견 혹은 순회로 지역 중소기업노동자 심리상담 서비스 제공(시군 보건소와 연계 추진), 찾아가는 힐링캠프 등 심리치유사업 추진 등
- 지원근거 : 근로복지기본법 제4조

근로복지기본법 제4조(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근로복지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경우 제3조의 근로복지정책의 기본원칙에 따라 예산·기금·세제·금융상의 지원을 하여 근로자의 복지증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중소기업 근로자와 가족을 위한 방문 심리상담사 파견 : 620,400천원 ○ 인건비 : 572,300천원 · 심리상담사 인건비 : 531,000천원 - 직접 인건비 : 30,000천원 * 15명 = 450,000천원 - 간접 인건비 : 직접 인건비 * 0.18 = 81,000천원 · 운영책임자 인건비 : 41,300천원 - 직접 인건비 : 35,000천원 - 간접 인건비 : 직접 인건비 * 0.18 = 6,300천원 ○ 운영비 : 48,100천원 · 사무실 운영비 : 40,000천원 · 홍보 및 사업지원비 : 8,100천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2회추경(B)	증감(B-A)		
계	620,400	0	620,400	620,400	0	0	신규
국 비	0				0		
도 비	620,400		620,400	620,400	0		통계목 변경
시군비	0				0		
기 타	0				0		

* 보조율 : 도비 10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	-	-	-	-	2020년 신규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19년 (2020~2024)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경제실	일자리노동정책과	노사협력팀	이상국 (행) 2240	김재환 (행) 3404	이원복 (행) 3414

노사민정 사무국 운영(과목경정)	정책사업	고용안정
	단위사업	노사복지
	세부사업	노사안정 및 교류 지원
	통 계 목	민간경상사업보조 (307-02)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 위탁사업비 (308-10)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노·사·민·정 주체들 간의 상호화합과 협력을 도모함으로써 충청남도의 고용·노동과 관련된 시책과 이슈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고 사업화하여 발전적 변화를 모색하는 등 지역 일자리 창출을 선도하고 협력적 노사상생 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충청남도 노사민정 협력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고자 사무국 운영
- 사업 위치 : 충청남도
- 사업 기간 : 2020. 1. ~ 2020. 12.(단년도 계속사업)
- 예 산 액 : **380,000천원(도비 100%) 【 지정액: 380,000천원 + 증감: 0천원 】 * 과목경정**
- ※ 과목경정 사유 :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의 소속기관 변경에 따른 과목경정
- 사 업 량 : 총 4개 사업 분야 16개 세부사업
- 사업시행방법 : 공기관 위탁
- 사업시행주체 :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충남일자리진흥원)
- 사업 내용 :
 - 노동권익증진(기초고용질서 확립, 찾아가는 힐링캠프, 취약계층 지원사업 등)
 - 노사협력(조정중재단 운영, 노동자 심리치유사업, 노사파트너쉽 교육)
 - 일자리창출지원(충남잡콘서트, 찾아가는 마이크를 부탁해, 충남고용노동 컨퍼런스 등)
 - 노사민정 거버넌스(노사민정 하부협의체 운영, 노사민정 협력지원, 홍보사업 등)
- 지원근거 :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조, 충청남도 노사관계 발전 지원 조례 제11조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국가의 책무) 국가는 노사의 자치가 강화되고 노사 협력적 관계가 정착·발전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5.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비영리법인 지원에 관한 사항

8. 그 밖의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사항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 각 호에 따른 국가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 지역의 근로자, 사용자 및 주민과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역 노사민정"이라 한다) 간 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지역 노사민정 간 협력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충청남도 노사관계 발전 지원 조례 제11조(사무국)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사무국을 두고, 사무국은 충청남도 노사업무 담당 과에서 운영하거나 도내 비영리법인(단체), 그 밖의 공공기관에게 위탁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③ 사무국장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처리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노사민정활성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사민정 사무국 운영 : 380,000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건비 : 150,000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무국장 : 50,000천원*1인 = 50,000천원 · 사무차장 : 37,000천원*1인 = 37,000천원 · 사무주임 : 28,000천원*1인 = 28,000천원 · 사 무 원 : 10,000천원*1인 = 10,000천원 · 퇴직적립금 : 12,500천원*1식 = 12,500천원 · 사회보험료등 : 12,500천원*1식 = 12,500천원 ○ 직접사업비 : 165,000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동권의 증진 등 4개 사업 분야 = 165,000천원 ○ 간접 사업비 : 65,000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무실 운영비(공공요금 등) : 50,000천원 · 일반관리비(총 사업비의 2%) : 7,400천원 · 여 비(국내여비) : 1일 출장비 50천원*152일 : 7,600천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2회추경(B)	증감(B-A)		
계	380,000	0	380,000	380,000	0	0	
국 비	0				0		
도 비	380,000		380,000	380,000	0		통계목 변경
시군비	0				0		
기 타	0				0		

* 보조율 : 도비 10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8년	390,000	380,410	9,590	97.5%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19년 (2020~2024)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경제실	일자리노동정책과	노사협력팀	이상국 (행) 2240	김재환 (행) 3404	이원복 (행) 3414

실직자 등 긴급 생계지원(재원변경)	정책사업	고용안정
	단위사업	노사복지
	세부사업	노사안정 및 교류 지원
	통 계 목	자체단체경상보조금 (308-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코로나-19로 실직자 발생 등에 따른 생계가 어려운 실직자 등 긴급 지원
- 사업 위치 : 충남도내
- 사업 기간 : 2020. 4. ~ 2020. 6.(2020년도 신규사업)
- 예 산 액 : 16,000,000천원(도비 16,000,000) * 재원변경: 자체재원 → 지역개발기금
- ※ 재원변경 사유 :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재원부족에 따른 재원 마련을 위한 변경
 - 지방자치법 제142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조, 지방공기업법 제19조, 충청남도 지역개발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0조에 의거하여 충청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그 밖에 주민 복리 증진 및 지역 개발을 위한 사업 등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에 기금 용자 가능
- 사 업 량 : 32,000명
- 사업시행방법 : 시군시행
- 사업시행주체 : 15개 시·군
- 사업 내용 : 코로나-19로 인한 실직 등으로 생계가 곤란해진 실직자 등에 가구당 1백만원 지원
- 지원근거 : 충청남도 노동자 권익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11조의2

충청남도 노동자 권익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11조의 2(재난 및 감염병 피해 노동자에 대한 지원) ① 도지사는 「재난 및 안전 관리기본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재난 및 「감염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감염병의 발생으로 휴업·휴직·실업 등으로 심각한 경제적 피해를 입은 노동자에 대하여 생계비 등 피해 복구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과 지원금액 등은 피해상황,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정한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직자 등 긴급 생계지원 : 32,000,000천원(도비 16,000,000 시군비 16,000,000) ○ 자체단체경상보조금 : 32,000,000천원 · 실직자 등 32,000명 x 1,000천원 = 32,000,000천원 	도비:시군비 (50:50)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2회추경(B)	증감(B-A)		
계	32,000,000	0	32,000,000	32,000,000	0	0	신규
국 비	0				0		
도 비	0		16,000,000		-16,000,000		
시군비	16,000,000		16,000,000	16,000,000	0		
기 타	16,000,000			16,000,000	16,000,000		지역개발기금

* 보조율 : 도비 50%, 시군비 5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	-	-	-	-	2020년 신규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19년 (2020~2024)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경제실	일자리노동정책과	일자리정책팀	이상국 (행) 2240	강영규 (행) 3401	이원복 (행) 3414

노사협력 우수사례 탐방	정책사업	고용안정
	단위사업	노사복지
	세부사업	노사안정 및 교류 지원
	통 계 목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 위탁사업비 (308-10)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노사민정협력활성화 국외 우수사례 탐방을 통해 충남 노사민정협력활성화에 기여
- 사업 위치 : 미정(국외)
- 사업 기간 : 2020. 6. ~ 11.(2020년 신규 사업)
- 예 산 액 : **8,000천원(국비 100%) 【 기정액: 0천원 + 증: 8,000천원 】**
- ※ 신규 편성 사유 : 2019년 지역노사민정협력활성화 우수지자체 선정에 따른 포상금 편성
- 사 업 량 : 국외 우수사례탐방 1식
- 사업시행방법 : 민간대행
- 사업시행주체 : (사)지역경제와 고용(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 사업 내용 : 노사민정협력활성화 및 노사협력 우수사례 지역 방문
- 지원근거 :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국가의 책무) 국가는 노사의 자치가 강화되고 노사 협력적 관계가 정착·발전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8. 그 밖의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사항

제3조(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 각 호에 따른 국가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 지역의 근로자, 사용자 및 주민과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역 노사민정"이라 한다)간 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지역 노사민정 간 협력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사협력 우수사례 탐방 : 8,000천원 ○ 노사협력 우수사례 탐방 : 8,000천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2회추경(B)	증감(B-A)		
계	8,000	0	0	8,000	8,000	0	신규
국 비	8,000		-	8,000	8,000		국고
도 비	0				0		
시군비	0				0		
기 타	0				0		

* 보조율 : 국비 10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	-	-	-	-	2020년 신규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19년 (2020~2024)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경제실	일자리노동정책과	노사협력팀	이상국 (행) 2240	김재환 (행) 3404	이원복 (행) 3414

충남 근로자복지회관 노후시설 보수 및 주변공사(과목경정)	정책사업	고용안정
	단위사업	노사복지
	세부사업	근로자복지회관 운영
	통 계 목	시설비 (401-01) 시설부대비 (401-03)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근로자복지회관의 2017년 수해피해 복구지원 및 노후된 건물과 주변 조경 등 수선 지원
- 사업 위치 : 충남 천안시 동남구 충무로 457
- 사업 기간 : 2020. 1. ~ 2020. 12.(신규사업)
- 예 산 액 : **100,000천원(도비 100%) 【 기정액: 100,000천원 + 증: 0천원 】 * 과목경정**
- ※ 과목경정 사유 : ①시설 관련 전문인력 부재, ②보수공사 완성도 제고 등의 사유로 공사를 종합건설사업소에 의뢰·추진함에 따라 공사추진에 소요되는 여비를 시설부대비로 재편성
- 사 업 량 : 근로자복지회관 수해피해 복구 및 주변 공사 1식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충청남도
- 사업 내용 : 근로자복지회관 수해피해 복구 및 주변 공사
- 지원근거 :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8조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8조(행정재산의 관리 및 처분) 관리책임 공무원은 관리하는 행정재산의 유지·보수를 철저히 하고 환경을 정비하여 행정수요에 대처하도록 하여야 한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자복지회관 수해피해 복구 및 주변공사 : 100,000천원 ○ (시설비) 지하 및 옥상 우레탄 방수포장, 조경 보완공사 등 : 99,110천원 ○ (시설부대비) 종합건설사업소 재배정 사업 추진에 따른 여비* 등 : 890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부대비 = 90,100천원 x 0.009 = 890천원 * 「2020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기획재정부)에 의거 편성 - 공사 감독과 재산취득에 따르는 여비, 공사현장 또는 사업장 감독관의 현장 체재비는 시설부대비에 계상하며, 시설부대비는 '공사비'에 따른 요율을 적용 - 건설부문 시설부대비 요율: 5천만원 초과 ~ 1억원까지 0.90%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2회추경(B)	증감(B-A)		
계	100,000	0	100,000	100,000	0	0	신규
국 비	0				0		
도 비	100,000		100,000	100,000	0		통계목 변경
시군비	0		-	-	0		
기 타	0		-	-	0		

* 보조율 : 도비 10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	-	-	-	-	2020년 신규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19년 (2020~2024)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경제실	일자리노동정책과	노사협력팀	이상국 (행) 2240	김재환 (행) 3404	이미용 (행) 2244

소상공기업과

소상공기업과

1. 군문화 엑스포 우수기업 제품전시 지원 51
2. '모바일 쇼핑몰'기반 중소기업제품 판촉 지원 53
3. 중소기업협동조합 기술사업화 지원 55
4. 충남 청년창업 인큐베이터 운영 57
5. 내포 혁신창업공간(지식산업센터) 건립 59
6. 중소기업 긴급경영안정자금 이자보전 ... 61
7.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63
8. 소상공인 긴급 생계지원(코로나19 대응)(재원변경) · 66
9. 충남 지역화폐 활성화 68
10. 계룡시골목상권 소비지원(지역현안) 70
11. 소상공인 고객관리 앱 지원(지역현안) 72
12.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성립전) 74
13. 2020년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76
14. 2020년 노후전선 정비사업 78

- 15. 소공인복합지원센터 구축사업 지원 80
- 16.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추경) 82
- 17. 충남 창조경제혁신센터 지원 84
- 18. 1839 청년창업 프로젝트 88
- 19. 소상공인 애로사항 팀닥터 운영 90

군문화 엑스포 우수기업 제품전시 지원	정책사업	중소기업활성화
	단위사업	중소기업 활성화 지원
	세부사업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 확대
	통 계 목	출연금 (306-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코로나19 확산 등에 따른 내수경기 침체에 따라 축제와 연계한 제품전시 지원을 통해 도내 우수기업의 매출 향상 및 홍보 효과 극대화 등
- 사업 위치 : 충남 아산시 염치읍 은행나무길 223 (충남경제진흥원)
- 사업 기간 : 2020. 9. ~ 10.(신규사업)
- 예 산 액 : **30,000천원(도비100%) 【 기정액: 0천원 + 증: 30,000천원 】**
- 사 업 량 : 10개사 내외
- 사업시행방법 : 출연기관 대행
- 사업시행주체 : (재)충청남도경제진흥원
- 사업 내용 : 군문화 엑스포 축제 연계 우수기업 제품전시 부스 임차비 및 홍보·관측 등 지원
- 지원근거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20조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과 대상 사업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본금 또는 재산의 전액을 출자 또는 출연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외국인 및 외국법인을 포함한다)와 공동으로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나 「민법」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단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1. 문화, 예술, 장학(장學), 체육, 의료 등의 분야에서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
2. 지역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며 지역개발을 활성화하고 촉진하는 데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20조(재정 지원)

-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출자·출연 기관에 출자금·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4조에 해당하거나 해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출자·출연 기관에 대해서는 재정 지원을 할 수 없다.
- ③ 출자금·출연금 또는 보조금의 교부·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군문화 엑스포 우수기업 제품전시 지원 : 30,000천원 ○ 기업지원비 : 26,500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스비 및 홍보·판촉 지원 등: 2,650천원 × 10개사 = 26,500천원 ○ 여비교통비 : 320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여비(근무지외) : 40천원 × 2명 × 3일 = 240천원 · 국내여비(근무지내) : 20천원 × 2명 × 2일 = 80천원 ○ 소모품비 : 50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무용품 및 다과비 : 50천원 × 1회 = 50천원 ○ 도서인쇄비 : 50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수막 : 50천원 × 1회 = 50천원 ○ 회의운영비 : 80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의운영비 : 20천원 × 4명 = 80천원 ○ 관리운영경비 : 3,000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리운영경비 : 30,000천원 × 10% = 3,000천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2회추경(B)	증감(B-A)		
계	30,000	0	0	30,000	30,000	0	신규
국 비	0				0		
도 비	30,000			30,000	30,000		

* 보조율 : 도비 10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	-	-	-	-	-	신규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대상	비대상
2019 (2020~2024)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경제실	소상공기업과	기업정책팀	김상태 (행) 2220	조의상 (행) 3434	이윤희 (행) 3439

모바일 쇼핑몰기반 중소기업제품 판촉 지원	정책사업	중소기업활성화
	단위사업	중소기업 활성화 지원
	세부사업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 확대
	통 계 목	출연금 (306-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모바일 기반 중소기업 제품 판매 촉진 지원
- 사업 위치 : 충남 아산시 염치읍 은행나무길 223(충남경제진흥원)
- 사업 기간 : 2020. 6. ~ 12.(신규사업)
- 예 산 액 : **124,000천원(도비100%) 【 기정액: 0천원 + 증: 124,000천원 】**
- 사 업 량 : 소비재 제조 중소기업 25개사
- 사업시행방법 : 출연기관 대행
- 사업시행주체 : (재)충청남도경제진흥원
- 사업 내용 : 모바일을 기반으로 한 유통사 및 홈쇼핑 방송사등 (롯데몰, 홈앤쇼핑 몰 등)에 입점을 지원하고 판매 촉진을 위한 판촉비 및 광고비 등을 지원
- 지원근거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26조(판로지원사업)

- ① 중소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의 국내외 시장 개척과 판로 거점 확보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중소기업 제품의 국내 유통망 구축과 홍보·판매 또는 사후관리 지원에 관한 사업
 2. 중소기업의 국내외 전시·박람회 개최 또는 참가 지원에 관한 사업
 3. 국내외의 거래알선과 상품홍보를 위한 정보망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업
 4. 중소기업의 국내외 마케팅 능력 향상 지원에 관한 사업
 5. 중소기업의 국외 조달 및 유통시장 진출지원에 관한 사업
 6. 중소기업의 국외시장개척단의 파견과 국외진출거점 확보 지원에 관한 사업
 7. 중소기업의 국외진출을 위한 통·번역 및 컨설팅 지원에 관한 사업
 8. 그 밖에 중소기업의 무역진흥을 위한 기반 확충과 판로개척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② 중소기업부장관은 국내외 판로지원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대하여 그 사업을 위탁하거나 관련 자료와 정보 제공 및 국내외 시장조사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③ 중소기업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 ④ 중소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매년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와 공동으로 국내외 판로 개척을 위한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고
산출 기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바일 쇼핑몰 기반 중소기업 제품 판매 촉진 지원 : 124,000천원 ○ 모바일 쇼핑몰 입점 지원 : 107,280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고.홍보비 4,000,000원 × 3회 = 12,000천원 · 상세페이지 제작지원 220,000원 × 25업체 = 5,500천원 · 판촉지원비(쿠폰비) 4,500원 × 462개 × 25개 업체 = 51,975천원 · 수수료 지원비 3,200원 × 470개 × 25개 업체 = 37,600천원 · SMS광고비 102,500원 × 2회 = 205천원 ○ 일반운영비 : 4,320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의비 : 20,000원 × 5명 × 10회 = 1,000천원 · 행사운영비 : 1,700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사운영비 250,000원 × 2회 = 500천원 - 평가수당 : 120,000원 × 5명 × 2회 = 1,200천원 · 소모품비 : 100,000원 × 3회 = 300천원 · 여비 : 3000천원 × 3회 × 8개월 = 720천원 · 통신비 : 300천원 × 2회 = 600천원 ○ 사업관리비 : 12,400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접사업비의 10%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2회추경(B)	증감(B-A)		
계	124,000	0	0	124,000	124,000	0	신규
국비	0				0		
도비	124,000		0	124,000	124,000		

* 보조율 : 도비 10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도	예산현액(A)	집행액(B)	집행잔액(C=A-B)	집행률(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고
2019	-	-	-	-	-	신규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조건부추진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대상	조건부추진
2019 (2020~2024)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경제실	소상공기업과	기업정책팀	김상태 (행) 2220	조의상 (행) 3434	이윤희 (행) 3439

중소기업협동조합 기술사업화 지원	정책사업	중소기업활성화
	단위사업	중소기업 활성화 지원
	세부사업	기업활동 지원
	통 계 목	민간경상사업보조 (307-02)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도내 중소기업협동조합 간 공동사업 추진 및 조합원 역량강화를 통한 기업경영 활성화 도모
- 사업 기간 : 2020. 1. ~ 12.(신규사업)
- 예 산 액 : **150,000천원(도비 100%) 【 기정액: 0천원 + 증: 150,000천원 】**
- 사업시행방법 : 민간대행
- 사업시행주체 : 중소기업중앙회 대전세종충남지역본부
- 사업 내용 : 중소기업협동조합 사업화지원(공통기술개발, 단체표준이전 등) 및 임직원 핵심역량 강화
- 지원근거 : 「충청남도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 제5조 및 제7조

<p>제5조(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 촉진)</p> <p>① 도지사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경제적 지위 향상 및 활성화를 위하여 경영지원, 판로촉진, 공동사업 등 필요한 시책을 실시할 수 있다.</p> <p>② 도지사는 제1항의 활성화 촉진을 위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p> <p>제7조(경영지원 등)</p> <p>② 도지사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운영 등에 필요한 전문 인력 양성과 능력향상을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 할 수 있다.</p>
--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기업협동조합 역량강화 및 기술사업화 지원 : 150,000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동조합 공동 R&D 및 사업화 지원: 50,000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동사업 : 10,000천원 x 3개조합 = 30,000천원 · 협동조합 간 협업지원 : 5,000천원 x 4개조합 = 20,000천원 ○ 협동조합 우수제품 전시회 및 마케팅 지원 : 30,000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수제품전시회 : 14,000천원 x 1개조합 = 14,000천원 · 조합 홈페이지 개편 및 공동마케팅 : 8,000천원 x 2개조합 = 16,000천원 ○ 협동조합 핵심역량강화 지원 : 70,000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동조합 및 중소기업 핵심역량 강화 : 7,000천원 x 4개조합 = 28,000천원 · 중소기업 리더스포럼 : 600천원 x 20개조합 = 12,000천원 · 공동사업개발 컨설팅 : 10,000천원 x 2개조합 = 20,000천원 · 중소기업 경영정보 제공 : 10,000원 x 500개업체 = 5,000천원 · 협동조합 지원사업 관리·운영 : 5,000천원 x 1식 = 5,000천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2회추경(B)	증감(B-A)		
계	150,000	0	0	150,000	150,000	0	신규
국 비	0				0		
도 비	150,000			150,000	150,000		
시군비	0				0		
기 타	0				0		

* 보조율 : 도비 10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	-	-	-	-	-	신규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19년 (2020~2024)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경제실	소상공기업과	기업정책팀	김상대 (행) 2220	조의상 (행) 3434	이총희 (행) 3440

충남 청년창업 인큐베이터 운영	정책사업	지역산업 기술개발 및 지원
	단위사업	벤처기업 육성
	세부사업	충남 청년창업 인큐베이터 운영
	통 계 목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308-10)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충남의 유망 청년창업가를 전문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창업 공간 마련을 통한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 및 충남 청년 창업의 중심 역할 수행
- 사업 위치 : 충남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 1415 농협시지부 건물
- 사업 기간 : 2020. 1. ~ 12.(단년도 계속사업)
- 예 산 액 : **750,000천원(도비) 【기정액 : 500,000천원 + 증 : 250,000천원】**
- ※ 증감 사유 : 본예산 편성 시 미반영된 운영비 증액 반영 필요
- 사업 량 : 충남 창업마루 나비(충남 청년창업 인큐베이터) 1개소 운영(천안농협시지부 건물 45층 / 1,521.2㎡)
- 사업시행방법 : 공기관 대행
- 사업시행주체 : 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
- 사업 내용 : 창업 공간 운영을 위한 시설 임대료, 관리비, 공공요금, 운영비, 사업비 지원
- 지원근거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및 시행령」 「충청남도 창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행안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지침, 민선7기 도지사 공약(10-1-1 충남 청년 창업프라자 조성)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4조의7(기술창업 활성화 등)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4조의7제2항에 따른 시책의 수립 및 추진과 관련된 업무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전담기관을 각 지역별로 지정할 수 있다.
 ④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2항에 따른 전담기관의 운영 및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5조의6(기술창업 활성화 지원 등 전담기관의 지정)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4조의7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같은 조 제1항의 시책의 수립·추진을 지원하는 각 지역별 전담기관(이하 "창조경제혁신센터"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충청남도 창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6조(창업지원시설의 설치·운영 등)
 ① 도지사는 창업에 필요한 업무를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관할 구역에 창업지원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창업지원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창업지원시설을 중소기업에 임대료, 관리비 등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창업지원시설의 창업활성화를 위한 사업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충남 청년창업 인큐베이터 운영비(본예산 500,000천원+추경 증 250,000천원) ○ 운영비 560,720천원(연간 운영비) - 인건비 111,520천원(전문매니저 2, 보조매니저 2, 여비, 특근매식비) - 사무관리비 19,700천원(운영위원회 운영비, 사무용품 구입, 도서구입 및 카페운영 등) - 임차료 240,000천원(건물 및 사무기기 임차료) - 공공요금 및 체세 84,000천원(전기, 수도, 가스, 통신비용 등) - 환경정비 용역 23,000천원 - 자산취득비 65,000천원(팹랩, 스튜디오 구축을 위한 장비 구입 등) - 시설환경구축 17,500천원(도서구입, 센터 내부 조명, 도색 등 시설환경 보완) ○ 사업비 117,780천원(연간 사업비) - 입주기업 지원, 네트워킹 활성화, 소재·부품·장비 스타트업 육성, 창업마루나비 홍보 등 ○ 간접비 71,500천원(운영비+사업비 17% 이내) - 창조경제혁신센터 규정 상 운영비+사업비의 17내% 지급 가능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2회추경(B)	증감(B-A)		
계	1,550,000	800,000	500,000	750,000	250,000	0	
국 비	0				0		
도 비	1,550,000	800,000	500,000	750,000	250,000		
시군비	0				0		
기 타	0				0		

* 보조율 : 도비 10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	-	-	-	-	-	2020년 신규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19년 (2020~2024)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경제실	소상공기업과	창업기반팀	김상대 (행) 2220	김필규 (행) 3441	안진성 (행) 2226

내포 혁신창업공간(지식산업센터) 건립	정책사업	지역산업 기술개발 및 지원
	단위사업	벤처기업 육성
	세부사업	내포 혁신창업공간(지식산업센터) 건립
	통 계 목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403-02)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지식산업센터 건립으로 중소기업 창업 확대 및 내포 신도시 활성화 기여
- 사업 위치 : 충남 홍성군 홍북읍 내포 도시첨단산업단지 내 혁신창업공간
- 사업 기간 : 2020 ~ 2023(신규사업)
- 예 산 액 : **1,000,000천원(국비100%) 【 기정액: 0천원 + 증: 100,000천원 】**
- 사 업 량 : 내포신도시 혁신창업공간(지식산업센터) 건립 1식
- 사업시행방법 : 공기관 위탁
- 사업시행주체 : 충청남도개발공사
- 사업 내용 : 내포 도시첨단산업단지 內 혁신창업공간(지식산업센터) 건립
- 지원근거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 4항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 4항(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에 대한 지원)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의 산업집적기반시설 및 산업기반시설의 설치를 우선 지원할 수 있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input checked="" type="checkbox"/> 내포 혁신창업공간(지식산업센터) 건립 : 1,000,000천원 <input type="checkbox"/> 내포 혁신창업공간(지식산업센터) 설계비 1식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2회추경(B)	증감(B-A)		
계	25,000,000	0	0	1,000,000	1,000,000	24,000,000	신규
국 비	16,000,000			1,000,000	1,000,000	15,000,000	국고보조금
도 비	9,000,000				0	9,000,000	
시군비	0				0		
기 타	0				0		자부담 등

* 보조율 : 국비 100%,(2023년까지 총사업비 보조율 : 국비 64%, 도비36%)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	-	-	-	-	-	신규

□ 사전절차 이행여부

지방재정 투자심사	중기지방 재정계획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예정	반영	예정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0.6. 예정	2019년 (2020~2024)	2020. 4~6월 예정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경제실	소상공기업과	벤처지원팀	김상태 (행) 2220	정문수 (행) 3437	손다미 (행) 2225

중소기업 긴급경영안정자금 이자보전	정책사업	중소기업육성
	단위사업	금융 및 기술 지원
	세부사업	중소기업자금지원 이자보전
	통 계 목	이자보전금 (307-08)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기위축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도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하여 금융비용 부담 지원
 - ※ 긴급 경영안정자금 지원을 통한 피해기업 금융비용 부담 경감으로 경영안정화 기여
- 사업 기간 : 2020. 1. ~ 12.(단년도 계속사업)
- 예 산 액 : **3,800,000천원(도비100%)** 【**기정액 : 1,300,000천원 + 증 : 2,500,000천원**】
 - ※ 긴급경영안정자금 4,566억원에 대한 이자보전 추가 : 25억원(당초 '20년 13억원 → 확대 38억원)
- 사 업 량 : 긴급 제조업 및 기술혁신형 경영안정자금 추가공급
 - 지원규모 : 4,566억원(중소기업 2,251억원, 소상공인 2,274억원)
 -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이자지원 2.0%(2년) * 아산시 긴급 1차 1% 추가지원
 -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자금 만기도래 연장 이자지원 1%(1년)
- 사업시행방법 : 직접 수행
- 사업시행주체 : 충청남도
- 사업 내용 : 이자지원
- 지원근거 : 「충청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11조

충청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11조(용자계획의 공고 등)
 도지사는 매년 기금의 용자실시 이전에 용자총액, 용자대상사업, 용자한도, 용자조건, 용자신청 절차 등에 관한 용자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중소기업경영안정 자금 이자보전 ○ 이자보전액 : 총 3,832,000천원 ≪일본수출피해 긴급자금≫ ·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41억×연 2.0% = 82,000천원 ≪중소기업 긴급자금≫ · (1차)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연 300억원×2.0% × 8월/12월 = 400,000천원 · (2차)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연 309억원×2.0% × 6월/12월 = 309,000천원 · (3차)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연 500억원×2.0% × 5월/12월 = 417,000천원	

산출 기초	<p>《소상공인 긴급자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차)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연 104억원×2.0%×9월/12월 = 156,000천원 · “ (아산시) 경영안정자금 연 96억원×3.0%×9월/12월 = 216,000천원 · (2차)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연 150억원×2.0%×7월/12월 = 175,000천원 · (3차)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연 1000억원×2.0%×6월/12월 = 1,000,000천원 <p>《만기도래 기한연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기업 자금 만기도래 기한연장(1년) 1,142억원×1.0%×6월/12월 = 577,000천원 · 소상공인자금 만기도래 기한연장(1년) 924억원×연 1.0%(7개월) = 500,000천원 <p>∴ 기존 1,300,000천원 + 추경 2,532,000천원 = 3,832,000천원 추경예산 : 2,532,000천원 ≒ 2,500,000천원</p>	
-------	--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2회추경(B)	증감(B-A)		
계	3,800,000	0	1,300,000	3,800,000	2,500,000	0	
국 비	0				0		
도 비	3,800,000		1,300,000	3,800,000	2,500,000		
시군비	0				0		
기 타	0				0		

* 보조율 : 도비 100%

전년도 예산 결산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	-	-	-	-	-	신규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19 (2020~2024)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경제실	소상공기업과	기업금융팀	김상태 (행) 2220	강철구 (행) 3435	이영진 (행) 3442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정책사업	소상공인 육성 및 지원
	단위사업	소상공인 지원
	세부사업	소상공인 지원
	통 계 목	자치단체경상보조 (308-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도내 소상공인 경영부담 완화 및 근로자의 4대 보험 가입을 통한 고용안정과 사회안전망 편입 유도
- 사업 위치 : 도내 일원(15개 시군)
- 사업 기간 : 2020. 1. ~ 12.(단년도 계속사업)
- 예 산 액 : **13,500,000천원 【기정액 : 10,000,000천원 + 증 : 3,500,000*천원】**
 - ※ 증감 사유 : 2020년 본예산 편성 시 연간소요예산액의 약 50%만 반영하여 추가 편성
 - * 추경 증액분(3,500,000천원) = 자체재원(1,200,000천원)+ 부담금(2,300,000천원)
 - ** 부담금 등 : 재원부족으로 인한 금고협력사업 매칭
- 사 업 량 : 두루누리 지원금을 제외한 4대 보험 사업주 부담분
- 사업시행방법 : 시군시행(道-시·군-3대 보험공단 연계)
- 사업시행주체 : 충청남도, 시군
- 사업 내용 : 사회보험료 사업주 부담분 전액 지원(사업주 부담액 중 두루누리 지원금 차액 지원)
- 지원근거 : 「충청남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충청남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사회보험료 지원)

① 도지사는 소상공인 등에 대하여 사회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통계법」 제22조에 의거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 분류항목표 L부동산업 중 주거용 부동산 관리업과 S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중 협회 및 단체는 제외한다.<신설 2020.3.10.>

② 제1항에 따라 지원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사업장의 주된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충남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신청서를 작성하고 다음 각 호의 신청서류 1부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개정 2020.3.10.>
2. 사업자등록증 사본<개정 2020.3.10.>
3. 사업장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개정 2020.3.10.>
4. 사업장 국민연금보험료 월별 납부확인서<개정 2020.3.10.>
5. 사업장 고용·산재보험료 납부확인서<개정 2020.3.10.>
6. 신청인의 통장 사본<개정 2020.3.10.>

③ 신청인이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하는 경우, 시장·군수는 제2항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각 서류를 서면 제출에 갈음할 수 있다.<개정 2020.3.10.>

□ 산출 근거 : <붙임 참조>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2회추경(B)	증감(B-A)		
계	32,119,576	0	26,119,576	29,619,576	3,500,000	2,500,000	
국 비	0	0	0	0	0		
도 비	13,700,000	0	10,000,000	11,200,000	1,200,000	2,500,000	
시군비	16,119,576	0	16,119,576	16,119,576	0		
기 타	2,300,000	0	0	2,300,000	2,300,000		부담금 등 (금고협력사업)

* 보조율 : 도비 및 부담금 등 50%, 시군비 5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7,350,000	7,262,303	87,697	98.8%	-	-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조건부추진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19년 (2020~2024)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경제실	소상공기업과	자영업지원팀	김상대 (행) 2220	안미선 (행) 3436	이가희 (행) 2224

'20년 사업비 집행계획

(단위 : 천원)

구분	'20년 예산 편성액	분기별 집행 계획					비 고
		합계	'19년 4분기 (3월)	'20년 1분기 (6월)	'20년 2분기 (9월)	'20년 3분기 (12월)	
총 계	29,619,576	32,105,653	6,384,685	7,770,510	8,547,000	9,403,350	
도분청	13,500,000	16,052,826.5	3,192,342.5	3,885,255	4,273,500	4,701,675	
(시군계)	16,119,576	16,052,826.5	3,192,342.5	3,885,255	4,273,500	4,701,675	
천안시	3,750,000	4,487,867	871,232	1,092,630	1,201,860	1,322,145	
공주시	1,272,685	926,079	187,704	223,080	245,355	269,940	
보령시	1,155,865	803,757	161,577	194,040	213,345	234,795	
아산시	1,326,303	2,737,328	525,337.5	668,250	735,075	808,665	
서산시	1,822,565	1,537,578	329,448	364,980	401,445	441,705	
논산시	1,422,085	946,100	191,390	228,030	250,800	275,880	
계룡시	486,533	345,514	66,829	84,150	92,565	101,970	
당진시	1,538,740	1,109,706	216,891	269,775	296,670	326,370	
금산군	581,470	417,892	85,747	100,320	110,385	121,440	
부여군	320,491	451,950	90,930	109,065	119,955	132,000	
서천군	212,026	287,514	58,659	69,135	76,065	83,655	
청양군	131,702	195,456	37,551	47,685	52,470	57,750	
홍성군	1,195,025	836,037	167,457	201,960	222,255	244,365	
예산군	370,825	533,878	109,663	128,205	140,910	155,100	
태안군	533,261	436,171	91,927	103,950	114,345	125,895	

소상공인 긴급 생계지원(코로나19 대응)(재원변경)	정책사업	소상공인 육성 및 지원
	단위사업	소상공인 지원
	세부사업	소상공인 지원
	통 계 목	자치단체경상보조 (308-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코로나 19 감염병 발생으로 인한 지역소비 위축, 관광, 수출 등에 부정적 파급효과 발생으로 영업에 심대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하여 생계비 등 피해복구를 위한 긴급 지원, 지역소비 촉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사업 기간 : 2020. 3. ~ 12.(신규사업)
- 예 산 액 : **50,000,000천원**(지역개발기금) ※ 재원변경(자체재원 → 지역개발기금)
 ※ 재원변경 사유 :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재원부족에 따른 재원 마련을 위한 변경
- 사 업 량 : 업체당 1,000천원 지원 (지역개발기금 500천원, 시군비 500천원)
- 사업시행방법 : 시군시행
- 사업시행주체 : 충청남도, 시군
- 사업 내용 : 매출액 20% 감소 소상공인에게 현금 또는 지역화폐 지원
- 지원근거 : 충청남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지원사업) 도지사는 소상공인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4. 그밖의 소상공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한 사업

(개정안)

제6조의 2(재해·재난 피해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① 도지사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및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의 발생으로 영업에 심대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하여 생계비 등 피해복구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기준과 지원금액 등은 피해 상황,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정한다.

□ 산출 근거 : 불임 참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	비 고
산출 기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상공인 긴급 경영지원금 지원 : 100,000,000천원 ◦ (지역개발기금) 100,000개 업체 × 500천원 = 50,000,000천원 ◦ (시군비) 100,000개 업체 × 500천원 = 50,000,000천원 	-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2회추경(B)	증감(B-A)		
계	100,000,000	0	100,000,000	100,000,000	0	0	신규
국 비	0	-	-	-	0		
도 비	0	-	50,000,000	-	△50,000,000		
시군비	50,000,000	-	50,000,000	50,000,000	0		
기 타	50,000,000	-	-	50,000,000	50,000,000		지역개발기금

* 보조율 : 도비 50%, 시군비 5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	-	-	-	-	-	2020년 신규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19년 (2020~2023)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경제실	소상공기업과	자영업지원팀	김상태 (행) 2220	안미선 (행) 3436	이승원 (행) 3443

충남 지역화폐 활성화	정책사업	지역경제활성화
	단위사업	유통산업 발전 및 구조개선
	세부사업	소상공인 육성 지원
	통 계 목	자치단체경상보조 (308-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지역 내 내수 촉진을 통한 소상공인을 비롯한 자영업자 및 골목상권 활성화
- 사업 위치 : 15개 시군
- 사업 기간 : 2020. 1. ~ 12.(단년도 계속사업)
- 예 산 액 : **1,987,920천원** 【**기정액 : 1,000,000천원 + 증 : 987,920천원**】
- ※ 증감 사유 : 추가발행(261,020,000천원)에 따른 증액(국비 8 : 지방비 2 매칭)
- 사 업 량 : 15개 시군, 331,320,000천원
- 사업시행방법 : 시군 시행
- 사업시행주체 : 시군
- 사업 내용 : 지역화폐(상품권) 발행 유통(판매, 환전, 할인 등)
- 지원근거 : 충청남도 지역화폐의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

충청남도 지역화폐의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7조(재정지원 및 신청)

① 도지사는 시장·군수가 지역상권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화폐 발행·유통하는 경우에 그 소요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p>■ 충남 지역화폐 활성화 : 1,987,920</p> <p>○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매칭) $1,406,000 \times 100\% = 1,406,000^* \times 30\% = 421,800$</p> <p>※ (지원조건) 국비(1,406,000) 이상의 지방비 확보 및 집행</p> <p>* 국비 이상의 지방비 / 70% 시군 부담</p> <p>○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추경) 매칭) $261,020,000^* \times 2\% = 5,220,400 \times 30\% = 1,566,120$</p> <p>※ (지원조건) 코로나19 발생 이후 추가 발행(계획)액의 2% 지방비 부담 / 국비 8% 지원</p> <p>* 코로나19 이후 추가발행(계획)액 / 지방비 70% 시군 부담</p>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2회추경(B)	증감(B-A)		
계	6,626,400	0	5,431,000	6,626,400	1,195,400	0	
국 비	0	0	0	0	0	0	
도 비	1,987,920	0	1,000,000	1,987,920	987,920	0	
시군비	4,638,480	0	4,431,000	4,638,480	207,480	0	
기 타	0	0	0	0	0	0	자부담 등

* 보조율 : 도비 30% 시군비 7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373,000	346,428	26,572	92.9%	0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19 (2020~2024)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경제실	소상공기업과	자영업지원팀	김상대 (행) 2220	안미선 (행) 3436	이영재 (행) 3444

계룡시골목상권 소비지원(지역현안)	정책사업	지역경제활성화
	단위사업	유통산업 발전 및 구조개선
	세부사업	소상공인 육성 지원
	통 계 목	자치단체등이전 (308-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지역 소상공인 소득증대 및 골목상권 활성화
- 사업 위치 : 충남 계룡시
- 사업 기간 : 2020. 1. ~12.(신규사업)
- 예 산 액 : **20,000천원(도비100%) 【 기정액: 0천원 + 증: 20,000천원 】**
- 사 업 량 : 40,000천원(계룡사랑상품권 인센티브 제공)
- 사업시행방법 : 계룡시 시행
- 사업시행주체 : 계룡시
- 사업 내용 : 계룡사랑상품권 30만원 이상 사용에 대한 추가 인센티브 지급
- 지원근거 : 충청남도 지역화폐의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

충청남도 지역화폐의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7조(재정지원 및 신청)
 ① 도지사는 시장·군수가 지역상권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화폐 발행·유통하는 경우에 그 소요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input checked="" type="checkbox"/> 계룡시 골목상권 소비지원 : 40,000 <input type="checkbox"/> (지역현안 건의사업) 40,000 × 50% = 20,000 / 50% 계룡시 부담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2회추경(B)	증감(B-A)		
계	40,000	0	0	40,000	40,000	0	신규
국 비	0				0		
도 비	20,000			20,000	20,000		
시군비	20,000			20,000	20,000		
기 타	0				0		

* 보조율 : 도비 50%, 시군비 5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	해	당	없	음	-	신규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19년 (2020~2024)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경제실	소상공기업과	자영업지원팀	김상태 (행) 2220	안미선 (행) 3436	이영재 (행) 3444

소상공인 고객관리 앱 지원(지역현안)	정책사업	지역경제 활성화
	단위사업	유통산업 발전 및 구조개선
	세부사업	소상공인 육성 지원
	통 계 목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308-10)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고객 DB관리를 통한 세분화 마케팅이 가능한 소상공인 고객관리(CRM) 앱 개발
- 사업 위치 : 충남 아산시 염치읍 은행나무길 223(충남경제진흥원)
- 사업 기간 : 2020. 6. ~ 12.
- 예 산 액 : 55,000천원(도비100%) 【 기정액: 0천원 + 증: 55,000천원 】
- 사 업 량 : 고객관리 앱 개발 1식, 고객관리 앱 운영 1식
- 사업시행방법 : 공기관 대행
- 사업시행주체 : (재)충청남도경제진흥원
- 사업 내용 : 소상공인들이 마케팅, 고객관리에 활용 가능한 고객관리(CRM) 앱 개발 및 운영
- 지원근거 : 충청남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p>제5조 지원사업</p> <p>도지사는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창업 지원 : 법 제8조 각 호에서 정한 사업 2. 경영안정 등 지원 : 법 제9조 각 호에서 정한 사업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홍보·마케팅 등 사업 3. 폐업 지원 : 법 제12조 각 호에서 정한 사업 4. 그 밖에 소상공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한 사업
--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명 : 소상공인 고객관리 앱 지원 ○ 앱 개발 용역 대금: 22,000천원 ○ 여비교통비 : 720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여비 : 20천원 × 6회 × 6개월 = 720천원 ○ 통신비 : 80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편물 발송 및 통신 수수료 : 80천원 × 1회 = 80천원 ○ 행사운영비 : 3,000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권역별 설명회 : 500천원 × 6회 = 3,000천원 	

구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고
산출 기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서인쇄비 : 1,000천원 · 현수막 : 50천원 × 20회 = 1,000천원 ○ 회의운영비 : 1,200천원 · 평가위원회 및 완료보고회 등 : 300천원 × 4회 = 1,200천원 ○ 소모품비 : 500천원 · 250천원 × 2회 = 500천원 ○ 지급수수료 : 4,800천원 · 평가위원 참석수당 : 300천원 × 5명 × 1회 = 1,500천원 · 완료보고회 참석수당 : 300천원 × 5명 × 1회 = 1,500천원 · 웹 호스팅 등 비용 : 300천원 × 1식 × 6개월 = 1,800 ○ 광고선전비 : 1,200천원 · 동영상 제작 홍보 : 1,200천원 × 1회 = 1,200천원 ○ 인건비 : 15,000천원 · 인건비 : 2,500,000천원 × 6개월 = 15,000천원 ○ 관리운영경비 5,500천원 · 관리운영경비 : 55,000천원 × 10% = 5,500천원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2회추경(B)	증감(B-A)		
계	55,000	0	0	55,000	55,000	0	
국비	0	0	0	0	0	0	
도비	55,000	0	0	55,000	55,000	0	
시군비	0	0	0	0	0	0	
기타	0	0	0	0	0	0	자부담 등

* 보조율 : 도비 100%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도	예산현액(A)	집행액(B)	집행잔액(C=A-B)	집행률(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고
2019년	해	당	없	음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관리계획	학술용역비사전심사	물품정수취득	홍보물사전심의	공공기관출연금의회의결	신규행사성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19년(2020~2024)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경제실	소상공기업과	자영업지원팀	김상태(행2220)	안미선(행3436)	유재석(3443)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성립전)	정책사업	지역경제활성화
	단위사업	유통산업 발전 및 구조개선
	세부사업	소상공인 육성 지원(보조)
	통 계 목	자치단체경상보조 (308-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지역 내 내수 촉진을 통한 소상공인을 비롯한 자영업자 및 골목상권 활성화
- 사업 위치 : 15개 시군
- 사업 기간 : 2020. 1. ~ 12.(단년도 계속사업)
- 예 산 액 : **1,406,000천원(국비100%)** 【 기정액: 0천원 + 증: 1,406,000천원 】
- 사 업 량 : 15개 시군, 70,300,000천원
- 사업시행방법 : 시군 시행
- 사업시행주체 : 시군
- 사업 내용 :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유통(판매, 환전, 할인 등)
- 지원근거 : 2020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 종합지침(행안부)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 1,406,000 ○ 70,300,000천원 × 2% = 1,406,000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2회추경(B)	증감(B-A)		
계	1,406,000	0	0	1,406,000	1,406,000	0	
국 비	1,406,000	0	0	1,406,000	1,406,000	0	국고
도 비	0	0	0	0	0	0	
시군비	0	0	0	0	0	0	
기 타	0	0	0	0	0	0	자부담 등

* 보조율 : 국비 10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617,000	616,591	409	99.9%	-	-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19 (2020~2024)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경제실	소상공기업과	자영업지원팀	김상태 (행) 2220	안미선 (행) 3436	이영재 (행) 3444

2020년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정책사업	지역경제 활성화
	단위사업	유통산업 발전 및 구조개선
	세부사업	2020년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통 계 목	자치단체 자본보조 (403-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전통시장의 안전한 환경조성을 위한 화재알림시설 설치
- 사업 위치 : 천안시 등 3개 시군, 4개 전통시장
- 사업 기간 : 2020. 1. ~ 12.(단년도 계속사업)
- 예 산 액 : **358,400천원(국비100%)** 【기정액 : 259,280천원 + 증 : 99,120천원】
- ※ 증감 사유 : 사업 추가 선정
- 사 업 량 : 5개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
- 사업시행방법 : 시군 시행
- 사업시행주체 : 천안시 등 4개 시군
- 사업 내용 : 전통시장 내 화재알림시설 설치
- 지원근거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및 시행령, 조례 등

<p>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조(시장의 특성별 육성)</p> <p>① 중소기업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장의 등록 여부, 개설 주기 및 주체, 상권의 범위 및 특성 등에 따라 시장을 체계적으로 육성하여야 한다.</p> <p>② 시장의 특성별 구분, 개설, 관리, 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시·군·구(구는 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시·군·구"라 한다)의 조례로 정한다.</p> <p>충청남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지원사업)</p> <p>도지사는 전통시장 등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상인조직에 대하여 예산 범위에서 그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경영현대화 촉진 사업 2. 시설현대화 사업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4. 화재위험 점검 및 그에 따른 시설보완 지원 사업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0년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 512,000천원 ○ 천안시 성정시장 : 40,000천원 × 1식 ○ 천안시 천안역전시장 : 51,200천원 × 1식 ○ 아산시 온양온천시장 : 168,000천원 × 1식 ○ 청양군 청양전통시장 : 111,200천원 × 1식 ○ 홍성군 홍성전통시장 : 141,600천원 × 1식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2회추경(B)	증감(B-A)		
계	512,000	0	370,400	512,000	141,600	0	
국 비	358,400		259,280	358,400	99,120		기금
도 비	0		0	0	0		
시군비	149,040		106,560	149,040	42,480		
기 타	4,560		4,560	4,560	0		자부담 등

* 보조율 : 국비 70%, 시군비 29%, 기타 1%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	-	-	-	-	-	-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19년 (2020~2024)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경제실	소상공기업과	자영업지원팀	김상대 (행) 2220	안미선 (행) 3436	김은총 (행) 3448

2020년 노후전선 정비사업	정책사업	지역경제 활성화
	단위사업	유통산업 발전 및 구조개선
	세부사업	2020년 노후전선 정비사업
	통 계 목	자치단체 자본보조 (403-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전통시장의 안전한 환경조성을 위한 노후전선 정비
- 사업 위치 : 천안시 등 3개 시군, 4개 전통시장
- 사업 기간 : 2020. 1. ~ 12.(단년도 계속사업)
- 예 산 액 : **230,000천원(국비100%) 【기정액 : 75,000천원 + 증 : 155,000천원】**
- ※ 증감 사유 :
 - 사 업 량 : 3개 전통시장 노후전선 정비
 - 사업시행방법 : 시군 시행
 - 사업시행주체 : 아산시 등 3개 시군
 - 사업 내용 : 전통시장 내 노후전선 정비
 - 지원근거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및 시행령, 조례 등

<p>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조(시장의 특성별 육성)</p> <p>① 중소기업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장의 등록 여부, 개설 주기 및 주체, 상권의 범위 및 특성 등에 따라 시장을 체계적으로 육성하여야 한다.</p> <p>② 시장의 특성별 구분, 개설, 관리, 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시·군·구(구는 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시·군·구"라 한다)의 조례로 정한다.</p> <p>충청남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지원사업)</p> <p>도지사는 전통시장 등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상인조직에 대하여 예산 범위에서 그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경영현대화 촉진 사업 2. 시설현대화 사업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4. 화재위험 점검 및 그에 따른 시설보완 지원 사업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0년 노후전선 정비사업 : 460,000천원 ○ 아산시 온양온천시장 : 150,000천원 × 1식 ○ 홍성군 홍성상설시장 : 210,000천원 × 1식 ○ 보령시 중앙시장 : 100,000천원 × 1식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2회추경(B)	증감(B-A)		
계	460,000	0	150,000	460,000	310,000	0	
국 비	230,000		75,000	230,000	155,000		.기금
도 비	0		0	0	0		
시군비	230,000		75,000	230,000	155,000		
기 타	0		0	0	0		자부담 등

* 보조율 : 국비 50%, 시군비 5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	-	-	-	-	-	-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19년 (2020~2024)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경제실	소상공기업과	자영업지원팀	김상대 (행) 2220	안미선 (행) 3436	김은총 (행) 3448

소공인복합지원센터 구축사업 지원	정책사업	지역경제활성화
	단위사업	유통산업발전 및 구조개선
	세부사업	소공인복합지원센터 구축사업 지원
	통 계 목	자치단체자본보조 (403-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복합지원센터 구축을 통해 스마트 제조장비, 제품개발, 전시, 판매, 온라인 마케팅을 일괄 지원하여 소공인* 혁신기반 조성
* 소공인 :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의 제조업
- 사업 위치 : 충남 공주시 유구읍
- 사업 기간 : 2019. 10. ~ 2021. 12.(다년도 계속사업)
- 예 산 액 : **537,000천원(도비100%) 【 기정액: 0천원 + 증: 537,000천원 】**
- ※ 증감 사유 : 중소벤처기법부 2019년 소공인 복합지원센터 구축사업 공모 선정에 따른 도비매칭 확약분 지원
- 사 업 량 : 공동판매장 구조 변경 구축 1식, 공동활용장비 구입 등
- 사업시행방법 : 시군시행
- 사업시행주체 : 공주시
- 사업 내용 : 인프라 구축(건축물 리모델링, 공동활용장비 구입 등)
- 지원근거 :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7조 및 제20조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7조(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 인프라 구축)

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집적지구의 기반시설 조성과 확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공동 폐기물 처리 시설의 설치
2. 사업장 등에 관한 건물과 시설물 등의 개량, 수리
3. 공동창고, 교육시설, 전기·가스·화재 등에 관한 안전시설물 등의 설치·개량
4.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이동과 사업장 등 이용의 편리를 도모하고 정보에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시설과 설비의 설치·보수
5. 그 밖에 집적지구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정부는 집적지구의 기반시설 조성 및 확충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공동사업의 지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시형소공인의 경영비용 절감 및 매출 증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공동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공동사업 수행을 위한 협동조합 설립 등 조직화 지원사업
2. 공동사업 수행을 위하여 조직된 단체(법인을 포함한다)와 중소기업과의 연계지원 사업
3. 제품, 디자인의 개발 및 기능 개선 등에 관한 사업
4. 생산에 필요한 공동시설 및 공동장비 등에 관한 사업
5. 구매, 물류에 필요한 공동시설 및 시스템 등에 관한 사업
6. 홍보, 브랜드, 판매장의 설치 등 공동판로에 관한 사업
7.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도시형소공인의 공동사업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고
산출 기초	■ 사업명 : 537,000천원 ○ 공동판매장 구조 변경 건축비 : 174,000천원 ○ 공동활용장비 구입 등 : 363,000천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2회추경(B)	증감(B-A)		
계	5,610,000	4,543,000	0	537,000	537,000	530,000	
국비	2,500,000	2,500,000	0	0	0	0	기금
도비	537,000	0	0	537,000	537,000	0	
시군비	2,573,000	2,043,000	0	0	0	530,000	
기타	0	0	0	0	0	0	자부담 등

* 보조율 : 도비 10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고
2019년	2,500,000	2,500,000	-	100%	-	-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19년 (2020~2024)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경제실	소상공기업과	자영업지원팀	김상태 (행) 2220	안미선 (행) 3436	이승원 (행) 3445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추경)	정책사업	지역경제활성화
	단위사업	유통산업 발전 및 구조개선
	세부사업	소상공인 육성 지원(추경)
	통 계 목	자치단체경상보조 (308-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지역 내 내수 촉진을 통한 소상공인을 비롯한 자영업자 및 골목상권 활성화
- 사업 위치 : 15개 시군
- 사업 기간 : 2020. 1. ~ 12.(단년도 계속사업)
- 예 산 액 : **20,881,000천원(국비100%) 【 기정액: 0천원 + 증: 20,881,000천원 】**
- 사 업 량 : 15개 시군, 261,020,000천원
- 사업시행방법 : 시군 시행
- 사업시행주체 : 시군
- 사업 내용 :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유통(판매, 환전, 할인 등)
- 지원근거 : 2020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 종합지침(행안부)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 20,881,000 ○ 261,020,000천원 × 8% = 20,881,000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2회추경(B)	증감(B-A)		
계	20,881,000	0	0	20,881,000	20,881,000	0	
국 비	20,881,000	0	0	20,881,000	20,881,000	0	국고
도 비	0	0	0	0	0	0	
시군비	0	0	0	0	0	0	
기 타	0	0	0	0	0	0	자부담 등

* 보조율 : 국비 10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617,000	616,591	409	99.9%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19년 (2020~2024)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경제실	소상공기업과	자영업지원팀	김상태 (행) 2220	안미선 (행) 3436	이영재 (행) 3444

충남 창조경제혁신센터 지원	정책사업	지역경제 활성화
	단위사업	유통산업 발전 및 구조개선
	세부사업	충남 창조경제혁신센터 지원사업(국가직접지원)
	통 계 목	출연금 (306-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지속가능한 창조경제 생태계 확산을 통해 지역 성장동력 기반 확충, 창업 촉진 및 청년 일자리 창출
- 사업 위치 :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읍 희망로 100(재단법인 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
- 사업 기간 : 2020. 1. ~ 2020. 12. (단년도 계속사업)
- 예 산 액 : 665,268천원 【기정액 : 400,000천원 + 증 : 265,268천원】
- ※ 증감 사유 : 국비확정내시에 따른 반영분. 필수경비만 본예산 반영되어, 부족분 증액 편성
- 사업시행주체 : 재단법인 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
- 사업 내용 : 아이디어 사업화 교육, 브랜드 역량강화 사업, 창업생태계 활성화, 지역특화사업 등
- 지원 근거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조의7,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6

<p>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조7(기술창업 활성화 등)</p> <p>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수립 및 추진과 관련된 업무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전담기관을 각 지역 별로 지정할 수 있다.</p> <p>③ 제2항에 따른 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지역의 기술창업 활성화 및 기업가정신 고취를 위한 추진과제 발굴 및 운영 2. 지역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과 이를 위한 관련 기관·프로그램의 연계 및 총괄 3. 지역 중소기업의 투자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지원과 이를 위한 관련 기관·프로그램의 연계 및 총괄 4. 지역의 예비창업자, 창업자 또는 중소기업과 관련된 법률·금융·고용·특허 등 상담과 관련 사무의 지원 5. 창의적인 아이디어, 신기술 등을 활용한 청년고용 창출 지원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무 <p>④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2항에 따른 전담기관의 운영 및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p> <p>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5조의6(기술창업 활성화 지원 등 전담기관의 지정 등)</p> <p>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4조의7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같은 조 제1항의 시책의 수립·추진을 지원하는 각 지역별 전담기관(이하 "창조경제혁신센터"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해당 기관의 장 및 해당 기관이 소재하는 지역의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p>
--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분	산출액	비고
산출 기초	<p> ▣ 충남 창조경제혁신센터 지원 : 665,268천원(본예산 400,000천원+추경 증 265,268천원) ○ 인건비 : 222,160천원 1. 보수(기본급여) : 188,400천원 - 센터장 : 9,700천원×1명×12개월= 116,400천원 - 책임 : 6,000천원×1명×12개월= 72,000천원 2. 시간외수당 : 14,400천원 - 책임 : 1,200천원×1명×12월=14,400천원 3. 가족수당 : 960천원 - 센터장 및 책임 : 40천원×2명×12월= 960천원 4. 퇴직급여충당금 : 18,400천원 - 센터장 및 책임 : 9,200천원×2명= 18,400천원 ○ 운영비 : 195,166천원 1. 일반수용비 : 60,370천원 - 직무역량강화교육비 : 200천원×8명 = 1,600천원 - 인쇄 및 유인비 : 300천원×4회 = 1,200천원 - 신문구독료 및 간행물 구입비 : 330천원×2회 = 660천원 - 각종 수수료 및 사용료 : 250천원×12개월 = 3,000천원 - 센터 언론(방송 등 매체활용)홍보비 : 6,000천원×6회 = 36,000천원 - 노무사자문료 : 200천원×12개월 = 2,400천원 - 회계업무 대행비 : 15,510천원×1식 = 15,510천원 2. 공공요금 및 제세 : 8,636천원 - 소방시설 전기안전 점검비 : 235천원×12개월 =2,820천원 - 화재보험료 : 2,516천원×1식 = 2,516천원 - 우편 및 택배발송료 등 : 75천원×12개월 = 900천원 - 전기안전검사 수수료 : 200천원×12개월 = 2,400천원 3. 특근매식비 : 6,000천원 - 6,000원×20명×4회×12개월 ≙ 6,000천원 4. 임차료 : 108,400천원 - 센터(천안) 임차료 : 3,650천원×12개월 = 43,800천원 - 센터(아산) 임차료 : 55,000천원×1식 = 55,000천원 - 복사기 임차료 : 400천원×2대×12개월 = 9,600천원 5. 복리후생비(기관부담금 등) : 11,760천원 - 법정부담금(4대보험) : 490천원×2명×12개월 = 11,760천원 </p>	

<p>○ 직무수행경비 : 12,000천원 - 센터장 월정직책급 : 1,000천원×1명×12개월= 12,000천원</p> <p>○ 사업비 : 235,942천원</p> <p>1. 아이디어 사업화 교육 : 110,300천원</p> <p>1-1 에너지신산업(태양광융복합) 취창업 교육훈련 : 20,300천원 - 위탁용역비 : 17,500천원 ×1식 = 17,500천원 - 사업활동비 : 1,600천원 ×1식 = 1,600천원 - 행사지원비 : 100천원 ×12개월 = 1,200천원</p> <p>1-2 충남농촌융합산업 경영체 역량강화 : 6,000천원 - HACCP 법정인증교육 : 500천원×12개월= 6,000천원</p> <p>1-3 시제품제작터 운영사업 : 84,000천원 - 위탁운영비 : 8,400천원×1식×10개월 = 84,000천원</p> <p>2. 지역혁신플랫폼운영 : 125,642천원</p> <p>2-1 충남 창업기업 해외 사업화 : 8,600천원 - 역량강화프로그램 : 5,000×1식 = 5,000천원 - 심사비 : 300천원×5인×2회 = 3,000천원 - 인쇄비 : 200천원×3회 = 600천원</p> <p>2-2 화목한디자인데이 사업 : 81,400천원 - 상표/디자인등록 : 500천원×20개사 = 10,000천원 - 브로슈어개발지원 1,000천원×14개사 = 14,000천원 - 장비보수 및 재료비 : 1,000천원×5회 = 5,000천원 - 전문가 심사수당 : 100천원×5인×5회 = 2,500천원 - 디자인개발지원 : 1,996천원×25개사 = 49,900천원</p> <p>2-3 투자생태계활성화 사업 : 5,000천원 - 투자IR 운영 : 1,000천원×2회= 2,000천원 - 투자포럼 개최 : 3,000천원×1식 = 3,000천원</p> <p>2-4 벤처생태계조성(C-Station 기획지원) : 2,000천원 - 인쇄비 : 200천원×5회 = 1,000천원 - 회의비 : 200천원×5회 = 1,000천원</p> <p>2-5 충남 농식품제품 유통네트워크 확대지원사업= 28,642천원 - 아름드리판촉행사 : 2,000천원×9회= 18,000천원 - 제품발굴품평회 : 2,000천원×5회 = 10,000천원 - 판촉지원 기타지원비 : 642천원×1식 = 642천원</p>	
--	--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2회추경(B)	증감(B-A)		
계	2,564,268		2,299,000	2,564,268	265,268		계속
국 비	1,899,000		1,899,000	1,899,000	0		국가직접지원
도 비	665,268		400,000	665,268	265,268		
시군비							
기 타							

* 보조율 : 국비 74%, 도비 26%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980,000	941,346	38,654	96%	-	-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대상	비대상
2019년 (2020~2024)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경제실	소상공기업과	창업기반팀	김상태 (행) 2220	김필규 (행) 3441	안진성 (행) 2226

1839 청년창업 프로젝트	정책사업	지역 벤처창업 육성 지원
	단위사업	지역 창업가 육성 지원
	세부사업	청년창업지원사업
	통 계 목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308-10)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창업을 일자리 창출의 최고의 대안사업으로 여기고 청년의 수도권 유출을 막고 지역 정착 유도를 위한 청년 창업가를 발굴·육성
→ 내실 있는 청년기업 육성을 통한 청년 실업 극복 및 고용환경 개선
- 사업 위치 : 충청남도
- 사업 기간 : 2020. 1. ~ 12.(단년도 계속사업)
- 예 산 액 : **900,000천원(국 410,000 도 490,000) 【 지정액: 0천원 + 증: 900,000천원 】**
※ 편성 사유 : 행정안전부 예산 확정
- 사 업 량 : 도내 거주 만39세 이하 미취업 청년 50명
- 사업시행방법 : 공기관 대행
- 사업시행주체 : 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
- 사업 내용 : 다양한 분야, 4차산업 대비 신성장 유망직종, 혁신적인 아이템 보유 청년 창업가 발굴하여 창업공간 제공, 창업프로그램 운영, 사업화 지원, 창업 교육, 네트워킹, 멘토링 제공 등
- 지원근거 : 충청남도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행안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지침

충청남도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제3조 (책무)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효율적 시책을 강구하고 적극 추진해야 한다.
제12조(경비지원) ① 도지사는 청년일자리 창출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비영리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3호. 청년 창업 지원 사업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839 청년창업 프로젝트 : 900,000천원 ○ 직접지원금 : 750,000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화지원비 : 50명×10백만원=500백만원 · 창업활동비 : 50명×3백만원= 150백만원 · 판로지원비 : 50명×2백만원=100백만원 ○ 기타지원금 : 70,000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 : 30백만원×1식=30백만원 · 멘토링, 네트워킹 : 10백만원×1식=10백만원 · 스타트업 후속지원 : 20백만원×1식=20백만원 · 사업운영비 : 10백만원×1식=10백만원 ○ 자율지원 : 80,000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행기관 위탁수수료 : 820백만원×10%이내=80백만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2회추경(B)	증감(B-A)		
계	900,000	0	0	900,000	900,000	0	신규
국 비	410,000			410,000	410,000		국고
도 비	490,000			490,000	490,000		
시군비	0				0		
기 타	0				0		자부담 등

* 보조율 : 국비 45.5%, 도비 55.5%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	-	-	-	-	-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19년 (2020~2024)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경제실	소상공기업과	벤처지원팀	김상대 (행) 2220	정문수 (행) 3437	손다미 (행) 2225

소상공인 애로사항 팀닥터 운영	정책사업	지역 벤처창업 육성 지원
	단위사업	지역 창업가 육성
	세부사업	청년창업지원사업
	통 계 목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308-10)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도내 업체, 소상공인을 위한 경영환경 지원금 및 컨설팅 지원
- 사업 대상 : 코로나 피해 업체 및 소상공인
- 사업 기간 : 2020. 6. ~ 12.(신규사업)
- 예 산 액 : **500,000천원(도비100%) 【 기정액: 0천원 + 증: 500,000천원 】**
- 사 업 량 : 120개사 지원(코로나 피해업체 50개사, 도내 일반 소상공인 70개사)
- 사업시행방법 : 공기관 대행
- 사업시행주체 : 충청남도 경제진흥원
- 사업 내용 : 코로나19 확산 종식 이후 경영 애로에 직면한 도내 업체, 소상공인에게 경영환경 지원금 및 맞춤형 처방(세무, 노무, 마케팅, 손익관리, 제품개발, 판로지원 등) 지원
- 지원근거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 1항, 제 21조 1항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 20조(재정 지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출자·출연기관 출자금·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 21조(대행 사업비의 비용 부담) ① 출자·출연기관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대행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상공인 애로사항 팀닥터 운영 : 500,000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팀닥터(컨설팅) : 172,800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40,000원×3인(전문가)×2회×120개 업체 = 172,800천원 ○ 개선지원금 : 220,000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000,000원×50개 업체(코로나 방문 점포) = 150,000천원 · 1,000,000원×70개 업체(일반 점포) = 70,000천원 ○ 일반운영비 : 36,200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급수수료(단시간근로자) 1,800천원×1인×7개월 = 12,600천원 · 지급임차료(렌트차량) 600천원×1인×7개월 = 4,200천원 · 차량유지비 200천원×1인×7개월 = 1,400천원 · 평가위원회 400천원×3인×2회 = 2,400천원 · 여비교통비 20천원×2인×80회 = 3,200천원 · 회의운영비 300천원×7개월 = 2,100천원 · 소모품비 200천원×7개월 = 1,400천원 · 도서인쇄비(현수막) 60천원×15개사·군×3개×2회 = 5,400천원 · 통신비 250천원×2회 = 500천원 · 홍보비 1,000천원×3회 = 3,000천원 ○ 운영인력 인건비 : 21,000천원(3,000,000원×1명×7개월) ○ 관리운영 수수료 : 50,000천원(총 사업비의 10%)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2회추경(B)	증감(B-A)		
계	500,000	0	0	500,000	500,000	0	신규
국 비	0				0		
도 비	500,000			500,000	500,000		
시군비	0				0		
기 타	0				0		

* 보조율 : 도비 10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	-	-	-	-	-	신규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19년 (2020~2024)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경제실	소상공기업과	벤처지원팀	김상대 (행) 2220	정문수 (행) 3437	손다미 (행) 2225

투자입지과

투 자 입 지 과

1. 외투자지역 조성(재원변경) 97
2. 외국인 투자기업 유치 보조금(재원변경) 99
3. 지역투자촉진 보조금(수도권)(재원변경) ... 101
4. 지역투자촉진 보조금(비수도권)(재원변경) · 103
5. 상생산업단지 조성사업 지원 105
6. 상생산업단지 조성 지원(어린이집 운영)(지역현안) · 108
7. 국방국가산업단지 조성 홍보물 제작 등 ... 110
(당초 사업명 : 국방산업발전협의회 운영)

외투지역 조성(재원변경)	정책사업	외국 투자유치
	단위사업	외자유치활동 적극 전개
	세부사업	외국인 투자지역 조성
	통 계 목	자치단체자본보조 (403-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외국인투자기업 전용 임대단지(외국인투자지역, FIZ) 조성으로 고도기술 보유 및 대규모 고용창출 등 글로벌 강소기업 지속 유치
- 사업 위치 : 송산2-2 외투지역
- 사업 기간 : 2019 ~ 2023(다년도 계속사업)
- 예 산 액 : **5,000,000천원[부담금 5,000,000]**
 ※ 변경 사유 : 코로나19 긴급예산편성 재원확보에 따른 재원변경[도비 → 지역개발기금(부담금)]
- 사 업 량 : 1개소
- 사업시행방법 : 국가직접지원
- 사업시행주체 : 해당 지분율에 따라 재산 취득
- 사업 내용 : 국가 및 지자체가 토지매입 후 기업 임대(국 60%, 도 20%, 시군 20%)
 - 당진 송산 2-2 단지형 외투지역 : 총면적 117,936.5㎡
- 지원 근거 :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4조 제1항 및 제18조 제1항 제1호

제14조(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투자유치활동에 대한 지원) ①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제18조에 따른 외국인투자지역의 조성, ... (중략) ... 그 밖에 외국인투자유치사업에 필요한 자금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최대한 지원하여야 한다.

제18조(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개발) ①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지역을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외국인투자지역(이하 "외국인투자지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및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일반산업단지 중에서 외국인투자기업에 전용(專用)으로 임대하거나 양도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지역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외투지역 (1개소) : 5,000,000천원 ○ 송산2-2 단지형 외투지역 : 1개소 · 14,373.021㎡ × 347,874원/㎡ ≒ 5,000,000천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2회추경(B)	증감(B-A)		
계	16,410,908	2,520,000	8,320,000	8,320,000	0	5,570,908	계속
국 비							
도 비	3,205,454	2,520,000	5,000,000	0	△ 5,000,000	685,454	
시군비	8,205,454	-	3,320,000	3,320,000	0	4,885,454	
지역개발기금	5,000,000	0	0	5,000,000	5,000,000		

* 보조율 : 국비 60%, 도비 20%, 시군비 20%

* 국비는 입주율에 따라 수시·직접 지급 / 시군비는 3~4년간 분할지급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5,281,400	5,281,400	0	100%	-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의결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19년 (2020~2024)	-	(송산2-2) 2018.10.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경제실	투자입지과	외자유치팀	이영석 (행) 2230	김영량 (행) 3372	김재진 (행) 3385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2회추경(B)	증감(B-A)		
계	20,000,000		20,000,000	20,000,000	0		계속
국 비							
도 비	0		10,000,000	0	△ 10,000,000		
시군비	10,000,000		10,000,000	10,000,000	0		
지역개발기금	10,000,000		0	10,000,000	10,000,000		

* 보조율 : 도비 50%, 시군비 5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12,000,000	12,000,000	0	100	-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19년 (2020~2024)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경제실	투자입지과	외자유치팀	이영석 (행) 2230	김영랑 (행) 3372	김재진 (행) 3385

지역투자촉진 보조금(수도권)(재원변경)	정책사업	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
	단위사업	내실 있는 기업 지원
	세부사업	지역투자촉진(수도권)
	통 계 목	자치단체기본보조(403-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충청남도 내 투자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 사업 위치 : 도내
- 사업 기간 : 2020. 1. ~ 2020. 12.(단년도 계속사업)
- 예 산 액 : **25,000,000천원[국비21,000,000 부담금 4,000,000]**
 ※ 변경 사유 : 코로나19 긴급예산편성 재원확보에 따른 재원변경[도비 → 지역개발기금(부담금)]
- 사 업 량 : 분기별(4회)
- 사업시행방법 : 시·군 시행
- 사업시행주체 : 시·군
- 사업 내용 : 국비 매칭 사업으로서, 충청남도 내 투자하는 수도권이전·신증설 기업 보조
- 지원 근거 :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충청남도 「충청남도 국내기업 투자유치 촉진조례」 등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의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제8조 ~ 제13조
제13조(지원내용)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9조, 제11조 및 제12조에 해당하는 경우 별표3에 따른 토지 매입가액의 일부(이하 “입지보조금”이라 한다)와 별표4에 따른 설비투자금액의 일부(이하 “설비보조금”이라 한다)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0조에 해당하는 경우 설비보조금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원할 수 있다.
충청남도 「충청남도 국내기업 투자유치 촉진조례」 제5조~제 8조
제5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의한 보조금 지원대상은 제2조제10호부터 제12호까지에 따른 기업을 유치하는 시장·군수로 한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지역투자촉진(수도권) ○ (국비) 21,000,000천원 / (부담금) 4,000,000천원 / (시군비) 6,000,000천원				
	구 분	매칭비율 (국:도:시군)	신증설기업 지원 비율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수도권인접지역 (천안, 아산, 당진)	(45:16.5:38.5)	설비투자금액(6%)	설비투자금액(8%)	토지매입가액(9%) 설비투자금액(11%)
	일반지역 (보령, 서산, 논산, 계룡, 홍성, 태안)	(65:14:21)	설비투자금액(8%)	토지매입가액(10%) 설비투자금액(11%)	토지매입가액(30%) 설비투자금액(14%)
지원우대지역 (공주, 금산, 부여, 서천, 청양, 예산, 국가혁신융복합단지)	(75:12.5:12.5)	설비투자금액(11%)	토지매입가액(20%) 설비투자금액(19%)	토지매입가액(40%) 설비투자금액(24%)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2회추경(B)	증감(A-B)		
계	31,000,000		31,000,000	31,000,000	0		계속
국 비	21,000,000		21,000,000	21,000,000	0		균특
도 비	0		4,000,000	0	△ 4,000,000		
시군비	6,000,000		6,000,000	6,000,000	0		
지역개발기금	4,000,000		0	4,000,000	4,000,000		

* 보조율 : 국비 45~75%, 도비 12.5~16.5%, 시군비 12.5~38.5%,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8년	27,000,000	17,098,532	9,901,468	63.3%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19년 (2020~2024)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경제실	투자입지과	기업유치팀	이영석 (행) 2230	이희철 (행) 3374	이정훈 (행) 3388

지역투자촉진 보조금(비수도권)(재원변경)	정책사업	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
	단위사업	내실 있는 기업 이전
	세부사업	지역투자촉진(비수도권)
	통 계 목	자치단체지분보조(403-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충청남도 내 투자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 사업 위치 : 도내
- 사업 기간 : 2020. 1. ~ 2020. 12.(단년도 계속사업)
- 예 산 액 : **17,662,000천원[부담금 17,662,000]**
 - ※ 변경 사유 : 코로나19 긴급예산편성 재원변경 : 도비 90억89백만원 → 지역개발기금(부담금)
 - ※ 증 액 : 12개社 보조금 지원계획에 따른 85억73백만원 반영
- 사 업 량 : 연 2회
- 사업시행방법 : 시·군 시행
- 사업시행주체 : 시·군
- 사업 내용 : 국비 매칭사업에서 제외되는 기업이 충청남도로 이전 또는 신·증설하는 기업의 입지·투자 금액에 따른 기업 보조 및 인센티브
- 지원 근거 : 충청남도 「충청남도 국내기업 투자유치 촉진조례」 및 「충청남도 국내기업 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

충청남도 「충청남도 국내기업 투자유치 촉진조례」 제5조~제 8조
제5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의한 보조금 지원대상은 제2조제10호부터 제12호까지에 따른 기업을 유치하는 시장·군수로 한다.
충청남도 「충청남도 국내기업 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 3조~9조
제9조(보조금 신청) ① 시장·군수는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기업이 보조금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 제 8조에 따른 타당성분석 결과 등을 바탕으로 지원대상 기업을 선정하고, 지원금액을 적정하게 산정하여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보조금을 신청하여야 한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지역투자촉진보조금(비수도권) : (부담금) 17,662,000천원 / (시군비) 21,655,700천원		○ 지역투자촉진보조금 - 입지 : 토지매입금액의 40% 범위 내 - 투자 : 설비투자금액의 14%	
	구 분	매칭비율 (도:시군)		비고
	수도권 인접지역 (천안, 아산, 당진)	(30:70)		
	일반지역 (보령, 서산, 논산, 계룡, 홍성, 태안)	(40:60)		
	지원우대지역 (공주, 금산, 부여, 서천, 청양, 예산, 국가혁신융복합단지)	(50:50)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2회추경(B)	증감(B-A)		
계	39,317,700		20,279,700	39,317,700	19,038,000		계속
국 비							
도 비	0		9,089,000	0	△ 9,089,000		
시군비	21,655,700		11,190,700	21,655,700	10,465,000		
지역개발기금	17,662,000		0	17,662,000	17,662,000		

* 보조율 : 도비 30~50%, 시군비50~7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15,089,000	15,083,314	0	99.9%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19년 (2020~2024)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경제실	투자입지과	기업유치팀	이영석 (행) 2230	이희철 (행) 3373	이정훈 (행) 3388

상생산업단지 조성사업 지원	정책사업	산업단지 조성 및 운영
	단위사업	지방산업단지 기반시설사업 지원
	세부사업	상생산업단지 조성 지원
	통계목	자치단체지분보조(403-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산업단지 근로자 정주환경 개선
- 사업 위치 : 천안시 등 9개 시·군
- 사업 기간 : 2014 ~ 2022(다년도 계속사업)
- 예산액 : **3,600,000천원(도비) [기정액 2,600,000 + 증 1,000,000]**
- * 보조율 : 도비 50%, 시군비 50%(예산액은 예산서상 표기되는 금액임. 따라서 시군비, 자부담 등 제외)
- ※ 증액 사유
 - 다년도 계속사업 추진[보령관창산업단지(공동기숙사/ '19년 5억원 지원), 보령웅천산업단지(복지센터/ '19년 6억원 지원)]
- 사업량 : 9개 시·군, 22개 사업
- 사업시행방법 : 시군시행
- 사업시행주체 : 시장·군수
- 사업 내용 : 근로자복지센터설치, 체육시설 리모델링, 공동기숙사 설치, 공동직장어린이집 지원 등
- 지원 근거 : 충청남도 산업단지 정주여건 개선에 관한 조례 제7조

충청남도 산업단지 정주여건 개선에 관한 조례 제7조(재정지원) 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상생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종합 계획 및 시행계획 관련 사업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재정지원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분	산출액	비고
산출 기초	■ 상생산업단지 조성사업 지원 : 7,200,000천원(도비 3,600,000, 시군비 3,600,000) ○ 천안시 : 247,000천원 · 백석농공 근로자복지센터 건립 1식 : 218,500천원 · 천안5산단 통근버스 지원 1식(45인승 2대) 1식 : 28,500천원 ○ 보령시 : 2,630,000천원 · 산업단지 문화예술행사 지원 1식 : 50,000천원 · 웅천석재농공 체육시설 설치 1식 : 500,000천원 · 요암농공 체육시설 설치 1식 : 80,000천원 · <u>관창산업단지 공동기숙사 설치 1식 : 1,200,000천원(도 600,000 시 600,000)</u> · <u>웅천산업단지 근로자복지센터 설치 1식 : 800,000천원(도 400,000 시 400,000)</u> ○ 아산시 : 250,000천원 · 인주산단 공동직장어린이집 지원 1식 : 60,000천원 · 아산테크노 공동직장어린이집 지원 1식 : 60,000천원 · 아산테크노 공동직장어린이집 환경정비사업 1식 : 30,000천원 · 아산테크노 문화예술행사 지원 1식 : 100,000천원	도비50% 시군비50%

구 분	산 출 액	비 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논산시 : 200,000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논산산단 공동직장어린이집 지원 1식 : 100,000천원 · 동산산단 산재예방시설 지원 사업 1식 : 50,000천원 · 강경농공 산재예방시설 지원 사업 1식 : 50,000천원 ○ 계룡시 : 47,000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룡1산단 CCTV 설치 1식 : 47,000천원 ○ 당진시 : 350,000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합덕농공 체육시설 설치 1식 : 50,000천원 · 신평농공 관리센터 리모델링공사 1식 : 300,000천원 ○ 부여군 : 40,000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홍산농공 체육시설 정비 1식 : 40,000천원 ○ 서천군 : 2,176,000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천농공 공동기숙사 설치 1식 : 1,676,000천원 · 장항원수농공 근로자 쉼터 및 체육시설 설치 1식 : 500,000천원 ○ 홍성군 : 1,260,000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홍성산단 근로자복지센터 설치 1식 : 1,200,000천원 · 홍성산단 통근버스 지원 1식 : 60,000천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2회추경(B)	증감(B-A)		
계	7,200,000		5,200,000	7,200,000	2,000,000		계속
국 비							
도 비	3,600,000		2,600,000	3,600,000	1,000,000		
시군비	3,600,000		2,600,000	3,600,000	1,000,000		
기 타							

* 보조율 : 도비 50%, 시군비 5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3,997,000	3,997,000	0	100%	-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19년 (2020~2024)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경제실	투자입지과	산단관리팀	이영석 (행) 2230	심주택 (행) 3376	최현규 (행) 3398

상생산업단지 조성 지원(어린이집 운영)(지역현안)	정책사업	산업단지 조성 및 운영
	단위사업	지방산업단지 기반시설사업 지원
	세부사업	상생산업단지 조성 지원
	통 계 목	자치단체지원보조(403-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산업단지 근로자 정주환경 개선
- 사업 위치 : 논산시
- 사업 기간 : 2020(신규사업)
- 예 산 액 : **10,000천원(도비) [기정액 0 + 증 10,000]**
 - * 보 조 율 : 도비 50%, 시군비 50%(예산액은 예산서상 표기되는 금액임. 따라서 시군비, 자부담 등 제외)
 - ※ 신규 편성 사유(지역현안 건의사업)
 - 논산일반산업단지의 산단형 공동직장어린이집 인건비 지원
- 사 업 량 : 1개 시, 1개 사업
- 사업시행방법 : 논산시 시행
- 사업시행주체 : 논산시장
- 사업 내용 : 공동직장어린이집 지원
- 지원 근거 : 충청남도 산업단지 정주여건 개선에 관한 조례 제7조

충청남도 산업단지 정주여건 개선에 관한 조례 제7조(재정지원) 도지사 와 시장·군수는 상생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종합 계획 및 시행계획 관련 사업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재정지원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	비 고
산출 기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생산업단지 조성 지원(어린이집 운영) ○ 논산산단 공동직장어린이집 운영 지원 1식 : 20,000천원(도 10,000, 논산시 10,000) 	도비50% 시군비50%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2회추경(B)	증감(B-A)		
계	20,000		0	20,000	20,000		신규
국 비							
도 비	10,000		0	10,000	10,000		
시군비	10,000		0	10,000	10,000		
기 타							

* 보조율 : 도비 50%, 시군비 5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	-	-	-	-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19년 (2020~2024)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경제실	투자입지과	산단관리팀	이영석 (행) 2230	심주택 (행) 3376	최현규 (행) 3398

국방국가산업단지 조성 홍보물 제작 등 (당초) 국방산업발전협의회 운영	정책사업	지역특화산업을 통한 지역발전 추진
	단위사업	지역특화산업을 위한 특성화산업단지 개발
	세부사업	국방국가산단 조성사업
	통계목	사무관리비(201-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충남 국방국가산업단지가 원활하게 조성될 수 있도록 산단 내 기업유치를 위한 홍보물 제작 및 전문가 자문을 위한 국방기관·기업유치 추진단 운영
- 사업 위치 : 충청남도 내
- 사업 기간 : 2020.1.1. ~ 2020.12.31.(단년도 계속사업)
- 예산액 : **5,000천원(도비) [기정액 18,000 + 감 13,000]**
 ※ 감액 사유 : 국방산업육성 관련업무 이관('19.12.16.)에 따라 해당 예산(국방산업발전협의회 운영) 감액 조정 (사무인수 부서 : 미래산업국 미래성장과)
- 사업량 : 국방산단 기업 유치를 위한 홍보물(1종), 국방기관·기업유치 추진단 운영 등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충청남도
- 사업 내용 : 국방국가산단 조성 홍보물 제작, 국방기관·기업유치 추진단 운영 등
- 지원 근거 : 충청남도 국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5조 제1항

충청남도 국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5조(국방산업 육성사업)

- ① 도지사는 국방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7. 국방국가산단 활성화 지원 사업
 8. 그 밖에 국방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고
산출 기초	■ 국방국가산업단지 조성 홍보물 제작 등 : 5,000천원 ○ 국방국가산단 조성 홍보용품 제작 : 3,000천원 × 1종 = 3,000천원 ○ 국방기관·기업유치 추진단 수당 및 회의자료 제작 등 : 2,000천원 × 1식 = 2,000천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2회추경(B)	증감(B-A)		
계	5,000		18,000	5,000	△ 13,000		계속
국 비							
도 비	5,000		18,000	5,000	△ 13,000		
시군비							
기 타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18,000	17,962	38	99.8%	-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19년 (2020~2024)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경제실	투자임지과	임지계획팀	이영석 (행) 2230	정원순 (행) 3374	이현우 (행) 3392

국제통상과

국제 통상과

1. 공무 국외출장 117
2. 도정시책 우수선진사례 조사연구 등 국외출장..... 119
3. 외국공무원 연수(K2H) 사업 운영 121
4. 외국공무원 연수(K2H) 사업 공공운영비 123
5. 외국공무원 연수(K2H) 사업 활동 125
6. 수출 중소기업 해외마케팅 지원 127

공무 국외출장	정책사업	국제화기반 확립
	단위사업	국제화역량 강화
	세부사업	공무원 해외 교류
	통 계 목	국외업무여비 (202-03)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도정 역점시책 및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글로벌 역량 제고
- 사업 위치 : 세계 각 국
- 사업 기간 : 2020. 1. 1. ~ 2020. 12. 31.(단년도 계속사업)
- 예 산 액 : **240,000천원(도비)** [기정액 : 300,000천원, 감액 : 60,000천원]
 ※ 감액 사유 : 코로나-19 확산 관련, 국제사회 전면적 외국인 입국금지 등에 따라 상반기 국외출장 추진불가
- 사 업 량 : 14건 75명(당초 18건 97명, △ 4건 22명)
- 사업시행방법 : 직접시행
- 사업시행주체 : 충청남도 소속 공무원
- 사업 내용 : 해외시장개척, 국제교류 추진 및 국제회의(행사) 참석 등
- 지원근거 : 충청남도 공무원의 출장 규정 및 공무원 여비규정,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

<p>충청남도 공무원국외 출장 규정</p> <p>제1조 ① 충청남도 소속 공무원의 공무로 인한 국외출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이 규정의 적용대상은 공무의 수행 그밖에 그 직무와 관련하여 국외에 출장하거나 파견되는 도 공무원으로 한다.</p> <p>공무원여비규정</p> <p>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공무원이 공무로 여행을 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무의 원활한 수행과 국가예산의 지출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p>
--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	비 고
산출 기초	<p>■ 공무원국외 출장</p> <p>○ 국제교류 추진 : 198,000천원(당초 : 240,500천원, 감액 : 42,500천원) ⇒ [60명(9건) * 3,300천원 = 198,000천원] - [77명(12건) * 3,123천원 = 240,500천원] (△ 42,500천원, △ 3건 17명)</p> <p>○ 투자통상(해외시장개척 등) : 32,000천원(당초 : 49,500천원, 감액 : 17,500천원) ⇒ [10명(4건) * 3,200천원 = 32,000천원] - [15명(5건) * 3,300천원 = 49,500천원] (△17,500천원, △ 1건 5명)</p> <p>○ 국제회의 및 행사 : 10,000천원(당초 : 10,000천원, 감액 : 0) - 5명(1건) * 2,000천원(아시아) = 10,000천원</p> <p>※ 산출금액은 출장국, 출장자 등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평균 금액으로 산정</p>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2회추경(B)	증감(B-A)		
계	240,000		300,000	240,000	△60,000		
국 비							
도 비	240,000		300,000	240,000	△60,000		
시군비							
기 타							

* 보조율 : 도비 10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300,000	299,593	407	99.8%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19년 (2020~2024)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경제실	국제통상과	국제협력팀	이종환 (행) 2250	박황진 (행) 3343	김은정 (행) 2251

도정시책 우수선진사례 조사연구 등 국외출장	정책사업	국제화기반 확립
	단위사업	국제화역량 강화
	세부사업	공무원 해외 교류
	통 계 목	국제화여비 (202-04)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도정 시책 우수 선진사례 조사 연구 및 정책현장 견학 등을 통한 공무원 업무능력 향상 도모
- 사업 위치 : 세계 각 국
- 사업 기간 : 2020. 1. 1. ~ 2020. 12. 31.(단년도 계속사업)
- 예 산 액 : **480,000천원(도비)** [기정액 : 600,000천원, 감액 : 120,000천원]
 ※ 감액 사유 : 코로나-19 확산 관련, 국제사회 전면적 외국인 입국금지 등에 따라 상반기 국외출장 추진불가
- 사 업 량 : 100건 160명(당초 108건 185명, △ 8건 25명)
- 사업시행방법 : 직접시행
- 사업시행주체 : 충청남도 소속 공무원
- 사업 내용 :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각종 해외시찰, 정책 견학, 자료수집 등 도정 주요시책 해외 우수 선진사례 조사 및 국외 단기연수 등
- 지원근거 : 충청남도 공무원국외 출장 규정 및 공무원 여비규정,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

충청남도 공무원국외 출장 규정

- 제1조 ① 충청남도 소속 공무원의 공무로 인한 국외출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이 규정의 적용대상은 공무의 수행 그밖에 그 직무와 관련하여 국외에 출장하거나 파견되는 도 공무원으로 한다.

공무원여비규정

-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공무원이 공무로 여행을 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무의 원활한 수행과 국가예산의 지출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	비 고
산출 기초	■ 도정시책 우수선진사례 조사연구 등 국외출장 ○ 선진행정 사례조사 등 : 480,000천원(당초 : 600,000천원, 감액 : 120,000천원) ⇒ [160명(99건) * 3,000천원 = 480,000천원] - [185명(108건) * 3,240천원 ÷ 600,000천원] (△ 120,000천원, △ 9건 25명) ※ 산출금액은 출장국, 출장자 등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평균 금액으로 산정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2회추경(B)	증감(B-A)		
계	480,000		600,000	480,000	△120,000		
국 비							
도 비	480,000		600,000	480,000	△120,000		
시군비							
기 타							

* 보조율 : 도비 10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500,000	499,364	636	99.8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19년 (2020~2024)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경제실	국제통상과	국제협력팀	이종환 (행) 2250	박황진 (행) 3343	김은정 (행) 2251

외국공무원 연수(K2H) 사업 운영

정책사업	국제화기반 확립
단위사업	국제교류·협력
세부사업	국제네트워크 구축
통 계 목	사무관리비(201-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해외 교류단체 소속 공무원을 초청하여 우리 도 행정, 문화 및 어학연수 등을 통한 국제 교류지역 인적 네트워크 구축
- 사업 위치 : 충청남도
- 사업 기간 : 2020. 4월 ~ 10월 중 6개월(단년도 계속사업)
- 예 산 액 : **0천원(도비)** [기정액 : 15,300천원, 감액 : 15,300원]
 - ※ 감액 사유 : 코로나-19 확산으로 외국 지방공무원 초청연수(K2H) 운영 취소에 따른 전액 삭감
- 사 업 량 : K2H 연수생 4명
- 사업시행방법 : 직접시행
- 사업시행주체 : 시도지사협의회, 충청남도
- 사업 내용 : K2H 초청연수생 숙소 임차료, 한국어 교육비, 숙소 기본생활품 등
- 지원근거 : 충청남도 국제화촉진과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제9조

충청남도 국제화촉진과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제9조(예산 반영)
 도지사는 투자심사 및 예산편성 과정에서 국제화 촉진과 국제교류협력을 위한 인프라 구축, 프로그램 개발 등 모든 시책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	비 고
산출 기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공무원 연수(K2H)사업 운영 ○ 사무관리비 : 15,300천원 — 외국공무원 연수(K2H) 주택임차료 : 9,600천원(400천원*4인*6개월) — 외국공무원 연수(K2H) 주택임차료 중개수수료 : 300천원 — 연수생 한국어 위탁교육비 및 교재비 : 5,240천원 — 전문강사 교육 : 5,040천원(35천원*3시간*3일*16주) — 교재비 : 200천원(50천원*4인) — 연수생 숙소 기본 생활품 구입비(침구류, 주방용품 등) : 160천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2회추경(B)	증감(B-A)		
계	0		15,300	0	△15,300		
국 비							
도 비	0		15,300	0	△15,300		
시군비							
기 타							

* 보조율 : 도비 10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15,300	15,300	-	100%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19년 (2020~2024)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경제실	국제통상과	국제협력팀	이종환 (행) 2250	박황진 (행) 3343	김은정 (행) 2251

외국공무원 연수(K2H) 사업 공공운영비	정책사업	국제화기반 확립
	단위사업	국제교류·협력
	세부사업	국제네트워크 구축
	통 계 목	공공운영비(201-02)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해외 교류단체 소속 공무원을 초청하여 우리 도 행정, 문화 및 어학연수 등을 통한 국제 교류지역 인적 네트워크 구축
- 사업 위치 : 충청남도
- 사업 기간 : 2020. 4월 ~ 10월 중 6개월(단년도 계속사업)
- 예 산 액 : **0천원(도비)** [기정액 : 4,000천원, 감액 : 4,000천원]
 - ※ 감액 사유 : 코로나-19 확산으로 외국 지방공무원 초청연수(K2H) 운영 취소에 따른 전액 삭감
- 사 업 량 : K2H 연수생 4명
- 사업시행방법 : 직접시행
- 사업시행주체 : 시도지사협의회, 충청남도
- 사업 내용 : K2H 초청연수생 숙소 관리비, 통신료 등
- 지원근거 : 충청남도 국제화촉진과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제9조

충청남도 국제화촉진과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제9조(예산 반영)
 도지사는 투자심사 및 예산편성 과정에서 국제화 촉진과 국제교류협력을 위한 인프라 구축, 프로그램 개발 등 모든 시책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	비 고
산출 기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공무원 연수(K2H)사업 공공운영비 ○ 공공운영비 : 4,000천원 — 외국공무원 연수(K2H)생 숙소 관리비 : 3,120천원 — 130천원*4인*6개월 — TV, 인터넷 등 통신료 : 880천원 — 37천원*4인*6개월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2회추경(B)	증감(B-A)		
계	0		4,000	0	△4,000		
국 비							
도 비	0		4,000	0	△4,000		
시군비							
기 타							

* 보조율 : 도비 10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2,200	2,097	-	95.3%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19년 (2020~2024)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경제실	국제통상과	국제협력팀	이종환 (행) 2250	박황진 (행) 3343	김은정 (행) 2251

외국공무원 연수(K2H) 사업 활동	정책사업	국제화기반 확립
	단위사업	국제교류·협력
	세부사업	국제네트워크 구축
	통 계 목	외빈초청여비(301-07)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해외 교류단체 소속 공무원을 초청하여 우리 도 행정, 문화 및 어학연수 등을 통한 국제 교류지역 인적 네트워크 구축
- 사업 위치 : 충청남도
- 사업 기간 : 2020. 4월 ~ 10월 중 6개월(단년도 계속사업)
- 예 산 액 : **0천원(도비)** [기정액 : 8,640천원, 감액 : 8,640천원]
 - ※ 감액 사유 : 코로나-19 확산으로 외국 지방공무원 초청연수(K2H) 운영 취소에 따른 전액 삭감
- 사 업 량 : K2H 연수생 4명
- 사업시행방법 : 직접시행
- 사업시행주체 : 시도지사협의회, 충청남도
- 사업 내용 : K2H 초청연수생 연수활동비(생활비)
- 지원근거 : 충청남도 국제화촉진과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제9조

충청남도 국제화촉진과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제9조(예산 반영)
 도지사는 투자심사 및 예산편성 과정에서 국제화 촉진과 국제교류협력을 위한 인프라 구축, 프로그램 개발 등 모든 시책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	비 고
산출 기초	■ 외국공무원 연수(K2H)사업 활동 ○ 외빈초청여비 : 8,640천원 — 외국공무원 연수(K2H)생 연수활동비(생활비) : 360천원*4인*6개월 ※ 부담비율 : 도(50%), 시도지사협의회(50%)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2회추경(B)	증감(B-A)		
계	0		8,640	0	△8,640		
국 비							
도 비	0		8,640	0	△8,640		
시군비							
기 타							

* 보조율 : 도비 10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8,640	4,800	-	55.5%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19년 (2020~2024)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경제실	국제통상과	국제협력팀	이종환 (행) 2250	박황진 (행) 3343	김은정 (행) 2251

수출 중소기업 해외마케팅 지원

정책사업	수출기반확대
단위사업	수출증대및해외마케팅 강화
세부사업	지역산업마케팅 지원 (해외시장 개척)
통 계 목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 위탁사업비(308-10)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도내 수출 중소기업의 해외마케팅 지원으로 해외시장 판로개척 및 수출 확대 등 지역 경제 활성화 도모
- 사업 기간 : 2020. 1. 1. ~ 12. 31.(단년도 계속사업)
- 예 산 액 : **2,775,000천원(도비)** [기정액 : 2,385,000천원 + 증 390,000천원]
 ※ 증감 사유 : 코로나-19로 인하여 비대면 마케팅을 통한 수출기업 지원 및 온라인 사업 확대
- 사 업 량 : 792개 업체(당초 619개사, 증 173개사)
- 사업시행방법 : 수출유관기관 대행
- 사업시행주체 : 충청남도
- 사업 내용 : 해외마케팅 패키지사업, 수출보증보험료 지원, 소비자연계 온라인마켓 입점 지원, 수입 원·부자재 대체 조달처 발굴사업 등
- 지원 근거 : 대외무역법 제7조 제1·6항,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중소기업기본법 제14조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제4조(무역거래기반조성사업 및 시행기관)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기관·법인 또는 단체 등(이하"주관기관"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무역거래기반 조성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

1. 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
2.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3.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4.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중소기업진흥공단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

중소기업기본법 제14조(국제화의 촉진)

- ① 정부는 중소기업의 국제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의 수출입 진흥과 외국 기업과의 협력 증진 등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② 정부는 중소기업이 국내외 경제 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에 대한 정보 제공 등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충청남도 중소기업 수출 진흥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위탁운영)

- ① 도지사는 중소기업의 해외마케팅 업무 등 수출촉진 및 확대에 필요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무역·통상 및 수출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할 때에는 해외시장개척 지원, 중소기업 수출기반 조성, 중소기업제품 판로지원 및 창업지원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무역·통상과 관련된 기관이나 단체를 수탁기관으로 선정할 수 있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분	산출액	비고	
산출기초	<p>《신규편성》 비대면마케팅 등 390백만원 83개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비재연계 온라인마켓 입점지원 : 100,000천원 - 30개업체x3,333천원=100,000천원 (증30개사) · 한류연계 확산 해외 인플루언서 활용 : 150,000천원 - 10개업체x15,000천원=150,000천원 (증10개사) · 전문 유망바이어 및 홍보동영상 제작지원 : 100,000천원 - 10개업체x10,000천원=100,000천원 (증10개사) · 콘텐츠 등 서비스산업 「온라인수출플랫폼」 구축 : 30,000천원 - 20개업체x1,500천원=30,000천원 (증20개사) · 수입 원·부자재 대체 조달처 발굴사업 : 10,000천원 - 13개업체x769,230천원=10,000천원 (증13개사) <p>《당초사업》 해외마케팅 지원 : 확대, 축소 조정 추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지사화 지원 : 160,000천원 - 40업체x4,000천원=160,000천원 (증60,000천원, 증15개사) · 글로벌 전자무역마케팅 지원 : 95,000천원 - 40업체x2,375천원=95,000천원 (증50,000천원, 증20개사) ·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 지원 : 250,000천원 - 25개업체x10,000천원=250,000천원 (증150,000천원, 증15개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출보증보험료 및 신용조사 지원 : 250,000천원 - 350업체x714천원=250,000천원 (증110,000천원, 증90개사) · 해외시장개척단 운영 : 150,000천원 - 3회(24업체)x50,000천원=150,000천원 (△100,000천원, △18개사) · 해외전시박람회 단체참가 : 350,000천원 - 8회(48업체)x43,750천원=350,000천원 (△100,000천원, △10개사) · 해외전시박람회 개별참가 : 200,000천원 - 30업체x6,666천원=200,000천원 (△150,000천원, △20개사) · (일몰)무역상사활용 수출대행지원 (△20,000천원, △2개사) · 해외마케팅 패키지사업 : 450,000천원 - 5회(40업체)x90,000천원=450,000천원 · 국내개최 국제 전시박람회 참가 : 80,000천원 - 5회(32업체)x16,000천원=80,000천원 · 자율선택형 수출기반활용 지원 : 400,000천원 - 80업체x5,000천원=400,000천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2회추경(B)	증감(B-A)		
계	2,775,000	0	2,385,000	2,775,000	390,000	0	도비100%
국비	0						
도비	2,775,000		2,385,000	2,775,000	390,000		
시군비	0						
기타	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도	예산현액(A)	집행액(B)	집행잔액(C=A-B)	집행률(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고
2019	2,480,000	2,480,000	-	100%	-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관리계획	학술용역비사전심사	물품정수취득	홍보물사전심의	공공기관출연금의회의결	신규행사성보조금심의
2019년(2020~2024)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경제실	국제통상과	통상지원팀	이종환 (행) 2250	정현섭 (행) 3344	정승원 (행) 3360 이재준 (행) 2252 강시내 (행) 3362